

『베트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제06호 정부령』

2026. 05. 04.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8415, 8418 8424, 8531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143,477
작성기관	한국인정평가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베트남 시행령 제06/2022/ND-CP호를 기반으로 2025년 제 119/2025/ND-CP호 및 2026년 제83/2026/ND-CP호 개정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운영, MRV 체계, 오존층 보호 및 통제 물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행정절차를 디지털화·간소화한 시행령임
- (적용범위) 온실가스 배출 시설, 탄소시장 참여자(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 참여자), 통제대상 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수입·수출·소비·처리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농업환경부(MAE) 중심의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탄소 거래소와 국가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배출권·탄소크레딧의 소유권·등록·거래·상쇄 관리를 법제화함. 또한 MRV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HCFC·HFC 등 통제물질과 관련 제품·장비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며, 국가단일창구(NSW) 기반 전자행정을 통해 이행관리 체계를 개선함
- (인증정보)
 - (탄소크레딧 발급절차) 방법론 선정 → 감축 프로젝트 등록 신청 → 공개 의견수렴 → 제3자 검증 → 감축 프로젝트 등록 승인 → 모니터링 보고 → 감축결과 검증 → 탄소크레딧 발급 → 국가등록시스템 등록·관리
 - (통제물질 관리절차) 대상 조직 농업환경부(MAE)등록 → 통제물질 생산·수입 할당량 신청 → 할당량 배정 → 연간 생산·수입·사용 실적 보고 (매년 1월 15일까지) → 회수·재활용·처리 관리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한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K-ETS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배출권 할당·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며, 특정물질 및 냉매 회수·처리 제도를 실시함

- (일본) GX-ETS와 J-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프론(Flon)류 배출 억제법을 통해 CFC·HCFC·HFC의 전주기 관리를 시행함
- (EU) EU ETS, CBAM 및 F-gas Regulation을 통해 배출권 제출, 탄소비용 부담, HFC 쿼터 및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탄소시장 제도 본격 도입으로 기업의 배출권 관리 및 탄소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MRV 단계화와 외부 검증 강화로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및 검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통제물질 규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 교체, 대체물질 전환, 회수·처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함. 다만 국가등록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투명성과 이행관리 효율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권고사항) 기업은 배출량, 설비, 통제물질 사용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여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조기에 파악해야 함. MRV 및 탄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크레딧 활용, 배출권 차입·이월 등 유연성 제도 활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공통) 기업은 제품·설비별 통제물질 사용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및 냉방능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또한 현지 수입자·대리인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등록, 할당량 신청, 연간 실적보고, 제3자 검증 및 국가등록시스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2040년 HCFC 퇴출 로드맵에 맞춘 저GWP 대체물질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5
III. 관련 인증 정보	20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24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24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26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28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28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30
VI. 대응 방안	31
참고 1 참고자료	33
참고 2 규정(부속서) 원문 번역본	34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Decree 06/2022/NĐ-CP	
	국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제06호 정부령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2026.03.23	시행현황	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03.23. (공포 즉시 시행)	통보일(고시일)	미통보
HS Code	8415, 8418, 8424, 8531 등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3,922,23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143,477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미대상 (베트남 내 진출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국내 수출기업의 제품과 무관)		
규제주요내용	해당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부 (MAE) 	
	규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행령 제06/2022/NĐ-CP호를 개정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MRV, 배출량 할당, 탄소시장 운영 및 통제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MRV 이행, 배출권 할당·소멸상쇄, 탄소크레딧 발급거래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제물질의 등록·할당·보고 및 회수·재활용·처리 의무를 강화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탄소시장 참여자 및 통제물질 취급 기업의 이행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임. 특히 배출량 할당 대상 시설과 냉매·공조·냉동설비 관련 기업은 인벤토리 보고, 제3자 검증, 국가등록시스템 등록, 통제물질 할당량 준수 및 실적보고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여부	예기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량 할당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MRV 이행 및 제3자 검증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통제물질 생산·수입·사용 기업은 할당량 초과 시 통관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냉매 포함 제품·장비의 회수·재활용·처리 의무 확대로 현지 관리체계 구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베트남 수출 또는 현지 운영 전 제품·설비의 냉매 사용 여부, HFC·HFC 등 통제물질 포함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사전 점검해야 함. 현지 수입자·대리인과 협력하여 MAE 등록, 국가등록시스템 계정 확보, 할당량 신청, 연간 실적보고 및 제3자 검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저GWP 대체물질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입(개정) 배경

-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 목표 및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정밀한 온실가스 감축·오존층 보호 이행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시행령(제06/2022/ND-CP호)의 운영상 한계 보완
 - 탄소거래소 및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배출권·탄소크레딧의 소유권, 계정 등록, 거래 및 상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고도화를 통해 감축 성과 데이터의 객관성,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을 확보함
- 탄소시장 본격 도입 및 국제 거래 대응
 - 2029년 탄소거래소 공식 운영 및 배출권 경매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표준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함

□ 규제(개정) 요지

- 관리체계 통합 및 주관부처 변경
 - 기존 천연자원환경부(MONRE) 중심 체계를 농업환경부(MAE)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통제물질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개편함
- 탄소시장 제도 고도화 및 국제 연계 강화
 - 탄소거래소 개념을 명확화하고, 국가등록시스템을 통해 배출권·탄소크레딧의 소유, 계정 등록, 거래, 차입, 이월, 소멸 및 상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

-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탄소크레딧 생성 방법론을 도입
- MRV 및 인벤토리·검증 체계 강화
 -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사업장이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를 검토·종합하여 농업환경부에 송부하도록 보고체계를 단계화함. 또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최근 2개년 결과를 포함을 명확화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 시설(화력발전, 철강, 시멘트)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농업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함
-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구체화
 - 배출권 할당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기고, 2025~2026년에는 발전·철강·시멘트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2027~2030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탄소크레딧 상쇄 한도는 30%로 확대하고, 할당량 차입·이월 등 거래 유연성 제도를 구체화함
- 통제물질 관리 강화 및 대상 확대
 - HCFC 통제물질관리를 단순 수출입 금지에서 완전 퇴출(Phase-out) 체계로 강화하고, HFC 감축 체계를 구체화함. 통제물질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한 제품·장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2028년부터 26.5kW 미만 소형 가전 제조·수입자에게도 회수·재활용·처리 책임을 확대 적용함
- 행정 절차 디지털화 및 효율화
 - 국가단일창구(NSW) 기반 전자행정 및 세관 연계를 도입하고, 등록 확인·정보공개·할당 처리기간을 단축함

□ 적용대상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시설 및 조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CO₂ eq 이상인 시설
-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화력발전소 및 산업 생산시설
- 연간 연료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화물 운송업체
-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상업용 건물
- 연간 처리용량이 65,000톤 이상인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 탄소시장 및 규제물질 관련 주체

- 배출할당량을 배분받은 시설
- 베트남 내 탄소크레딧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조직
- 파리협정 제6조 등 국제 탄소크레딧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조직
- 탄소거래 및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 통제물질 관련 조직 및 장비 보유자

- HCFC, HFC 등 통제물질의 생산·수입·수출·사용·처리 관련 조직 및 개인
- 통제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장비의 생산자 및 수입자
- 정격 냉방능력 26.5kW 이상 에어컨 또는 전기용량 40kW 이상 산업용 냉동 설비 보유 조직
- 통제물질의 회수,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시행일 및 주무부처

- 최초 시행일: 2022년 1월 7일 (시행령 제06/2022/NĐ-CP)
- 최신 개정·적용일: 2026년 3월 23일 (시행령 제83/2026/NĐ-CP)
 - (참고) 본 규정은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3월 23일 공포 및 시행된 최신 개정사항(제83/2026/NĐ-CP호)을 반영한 현행 통합 규정(Văn bản hợp nhất)을 최종 기준으로 함
- 주무부처: 농업환경부(MAE)
 - (참고)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자원환경부(MONRE) 및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관련 기능이 통합되어 농업환경부(MAE)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운영 및 통제물질 관리 업무를 총괄함

2

규제 세부 내용

□ 비교표

- 2022년 제정된 시행령(Decree No. 06/2022/ND-CP) 원문과 Decree No. 119/2025/ND-CP 및 Decree No. 83/2026/ND-CP의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된 현행 통합본을 대조하여 주요 규제내용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였음

조항	변경 전 (시행령 제06/2022/ND-CP)	변경 후 (119/2025/ND-CP + 83/2026/ND-CP 반영 통합본)
제2조 (적용 대상)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국내 탄소시장 개발 참여, 오존층 파괴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되는 온실가스의 생산·수입·수출·소비·처리에 관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탄소시장의 조직·개발,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상쇄 메커니즘 이행 , 오존층 파괴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되는 온실가스의 생산·수입·수출·소비·처리에 관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 정의)	<신설>	5b 파리협정 제6조 제4항의 메커니즘
	<신설>	5b 파리협정 제6조 제4항의 메커니즘
	12 탄소크레딧 거래소 탄소크레딧 거래소는 탄소크레딧 및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의 매매,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의 경매, 차입, 반납, 이전 거래를 처리하는 센터를 말한다.	12 탄소거래소 탄소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및 탄소크레딧을 집중적으로 교환·거래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18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교환은 탄소 크레딧 거래소에서 배출권과 크레딧을 매매, 경매, 차입, 상환, 이전하는 활동이다.	18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란 탄소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을 매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지속가능한 냉방
<신설>	국가등록시스템	
<신설>	탄소크레딧 생성 방법	
제7조 (감축 로드맵)	2026~2030년 기간 동안 천연자원환경부가 배분한 배출할당량에 따라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탄소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25~2030년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 농업환경부 체계하에서 할당량 배분 시설은 할당량에 부합하는 감축 조치를, 미배분 시설은 시설별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함
제8조 (온실가스 흡수증대)	산림관리·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 능력 증대 책임, 국내·국제 탄소크레딧 메커니즘 참여 권리, 농업농촌개발부의 흡수량 산정·모니터링 및 천연자원환경부의 관련 사업 관리·종합 책임을 규정함	흡수량 산정 범위를 기존 산림생태 권역에 더해 각 성 및 중앙직할시 단위까지 구체화 하고, 산림 흡수 증대 활동과 산림 흡수량에 대한 연례 모니터링·평가 체계 를 명확히

		함. 또한 농업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 보호 및 피복률·생물량·산림 품질 제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량을 기반으로 국내 탄소크레딧 생성 방법론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천연자원환경부의 별도 책임 조항은 폐지함
제9조 (국가 MRV시스템)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온실가스 감축 측정·보고·검증(MRV) 국가시스템의 주관기관으로서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	농업환경부(MAE)가 온실가스 감축 측정·보고·검증(MRV) 국가시스템의 주관기관이 되며, 분야별 관리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
제10조 (MRV 활동내용)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감축보고서를 천연자원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각각 직접 제출하고, 적격 검증기관·분야별 부처·천연자원환경부 중심의 검증 및 종합 절차를 수행함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감축보고서를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며,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를 검토·종합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농업환경부에 송부하도록 보고 체계가 단계화됨. 또한 감축 결과의 이중계산 가능성 검토와 9인 이상 국가 검증위원회 운영 요건이 구체화됨
제11조 (인벤토리)	대상 시설은 2년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검증 후 천연자원환경부에 12월 1일까지 최종 보고함	보고서에 연속 2개년 인벤토리 결과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 시설(발전·철강·시멘트 등)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12월 1일까지 농업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검증 체계를 의무화·구체화함
제12조 (배출할당량 배분)	천연자원환경부가 2026~2030년 및 매년 단위로 총 배출 한도를 산정하여 제품 단위당 배출 기준에 따라 시설별 할당량을 배분함	농업환경부 주도로 할당량 배분 시점을 2025년으로 조정 하고, 2025-2026년(화력발전·철강·시멘트우선), 2027-2028년, 2029-2030년으로 단계별 배분 체계를 고도화 함
제13조 (감축계획)	사업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6~2030년 기간의 감축계획을 수립·승인하여 천연자원환경부, 분야별 관리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에 제출함	사업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6~2030년 기간의 감축계획을 수립·승인하여 농업환경부, 분야별 관리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함
제14조 (검증기관)	UNFCCC 인정기관, ISO 14065 인증기관 또는 관련 교육 이수 기술인력 보유 등 국제기준·전문인력 중심의 검증기관 요건을 규정함	자격 요건을 베트남의 ‘적합성 평가 서비스 사업 조건법’에 따라 타당성 확인 및 검증 활동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은 조직으로 변경 하여 법정 등록 체계 중심으로 일원화함
제15조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온실가스	주무부처를 농업환경부(MAE)로 변

(검사·감독 책임)	감축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규정에 따른 검증기관의 감축 검증 활동을 검사·감독함	경하고, 감독 대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검증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검증 활동으로 구체화함
제16조 (참여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상 시설, 탄소 신용 교환·상쇄 메커니즘 참여 기관, 기타 관련 투자·사업 조직 및 개인 참여	참여 대상을 '배출권 할당 시설 (Quota exchange)', '국내 기관 및 조직(Carbon credit exchange)', '거래 지원 및 금융 서비스 조직 (Transaction support)'으로 기능별 세분화함
제17조 (로드맵 및 시점)	2027년 말까지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에 탄소거래소를 공식 운영함	준비 및 시범운영 단계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국가등록시스템 구축을 명시함. 이후 2029년부터 공식 운영을 개시하며, 배출할당량 경매제도 도입을 규정함
제18조 (국가등록 시스템)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 및 배출할당량의 거래 내역을 확인·관리하고, 관련 확인 절차를 규정함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을 구축하여 소유권, 계정 등록, 할당량 차입·이월·상환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운영·관리 체계를 규정함
제19조 (거래규칙)	탄소크레딧 1단위는 1톤 CO ₂ 상당량으로 규정되며, 초과 배출량 상쇄에 사용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은 배출할당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배출할당량 1단위는 1톤 CO₂ 또는 1톤 CO₂ 상당량 으로 명확화되었으며, 탄소크레딧 상쇄 한도는 배출할당량의 30%로 확대 됨. 또한 배출할당량 차입 한도 15%, 이월, 상쇄 등 거래 유연성 규칙이 구체화됨
제20조 (국내 메커니즘)	기존 탄소신용사업(CDM 등)의 등록 및 승인 절차 중심으로 규정하며,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천연자원 환경부에 등록함	단순 등록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분야별 국내 방법론 인정, 프로젝트 등록·변경·취소, 탄소크레딧 발급 및 국가등록시스템 연계·등록 등 전 과정을 표준화된 행정 체계로 개편 함
제21조 (시장 개발책임)	재무부(거래소 설립 주관)와 천연자원환경부(운영·관리 감독) 간의 업무 분담을 중심으로 시장 개발 책임을 규정함	농업환경부(운영 및 역량 강화), 재무부(재무 정책 수립), 지자체(인식 제고)로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칭을 '탄소거래소'로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함
제22조 (물질관리)	HCFC, HFC 등 통제물질을 지정하고, HCFC는 2040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규정함	HCFC 물질의 규제를 '수출입 금지'에서 완전 퇴출(Phase-out)로 강화 하고, 통제 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한 장비·제품의 생산 및 수입 금지 목록(부록 VI)과 국방·안보용 예외 기준을 신설함
제24조 (등록 및 보고)	정격 냉동능력 26.5kW 초과 및 전력 용량 40kW 초과 장비 보유 조직 등을 등록 대상으로 하며, 등록 확인(3	정격 냉동능력 26.5kW 이상 및 전력용량 40kW 이상 등으로 조정하

	일) 및 정보공개(10일) 절차를 규정함	여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확인 기간(2일) 및 정보 공개 기간(5일)을 단축함. 또한 전자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체계와 등록 정보의 활용 근거를 규정함
제25조 (통제대상 물질 생산·수입 할당요건)	통제 대상 물질의 생산·수입 할당량을 배분하고, 총 배분량이 국가 기준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HFC 등 특정 통제 물질과 등록 시설을 중심으로 할당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 잔여 할당량 및 관리 상황에 따라 연도별 할당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제25조 (통제대상 물질 생산·수입 할당절차)	할당량 배분 처리기간은 30영업일, 관계기관 의견회신 기한은 10영업일, 통지 기한은 3영업일로 규정하고, 재무부가 수출입 활동을 통제함	할당량 배분 처리기간을 22영업일, 관계기관 의견회신 기한을 7영업일, 통지 기한을 2영업일로 단축 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단일창구 및 세관절차연계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제27조 (오존층 보호 국가계획)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총리에게 제출함	농업환경부(MAE) 주관으로 계획 수립 권한이 이관 되었으며, 관리 범위를 통제대상 물질에서 이를 포함하거나 생산에 사용하는 장비·제품의 관리 및 퇴출 일정까지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 냉각 목표와 연계함
제28조 (수거· 재활용)	90,000 BTU/h, 약 26.5kW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조직 및 통제대상 물질 포함 장비·제품의 생산·수입자에게 해당 물질의 회수·재활용·재사용·처리 책임을 부여함	장비 소유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6.5kW 미만 장비·제품의 생산·수입자에게도 통제대상 물질의 회수·재활용·처리 책임을 확대 적용함
제29조 (관리책임)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오존층 보호 및 통제대상 물질 관리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무역부·농업농촌개발부·노동보훈사회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분야별 관리 책임을 수행함	주관부처가 농업환경부(MAE)로 변경 되고, 교육훈련부의 기술자 교육 인증 관리, 내무부의 노동 안전 기준 관리 등 관계부처의 역할이 구체화됨. 또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및 국가단일창구(NSW) 기반의 전자행정 관리가 강화됨
제33조 (활동장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오존층 보호, 기후친화적 대체물질 사용, 통제대상 물질 회수·처리 관련 기술의 연구·이전·개발 활동을 장려함	'기후친화적 지속 가능 냉방(Sustainable Cooling)', '통제 물질의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 '고효율 기술 도입' 등으로 인센티브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함

※ 상기 비교표는 조항별 개정 사항을 대조한 분석 내용이며, 하기의 내용은 2026년 현행 통합본을 기준으로 동 규제의 전반적인 요지와 부문별 세부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여 정리함

□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MRV 및 배출할당 체계 (제6, 7, 9~12조)

○ (감축목표 설정) 국가 목표(NDC) 연계 및 부문별 이행체계 (제7조)

- (국가목표 연계) 베트남은 국가 결정 기여(NDC) 목표에 따라 에너지, 농업, 토지 이용 및 임업(LULUCF),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등 5대 주요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함
- (부문별 계획 및 시설별 이행) 분야별 관리부처는 2030년까지의 분야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며, 배출할당량 배분 여부에 따라 시설별 이행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함
 - 할당량 배분 시설: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배출할당량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이행함
 - 미할당 시설: 배출할당량을 배분받지 않은 시설은 자체 수립한 시설 단위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조치를 이행함

*시설 단위 감축계획: 배출할당량이 배분되지 않은 시설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이행 문서(시행령 제13조 제4항)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전환, 공정 개선 등 시설별 감축조치를 포함함

○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수행 및 보고 (제11조)

- 대상 시설의 배출원, 활동자료, 배출계수 및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특정 기간 발생한 실제 배출량을 산정·기록하는 절차임
- (작성 주기) 대상 시설은 2년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 기준 최근 2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보고절차) 배출권 할당 대상 시설(발전·철강·시멘트 등)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인벤토리 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농업환경부

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 대상 시설은 인벤토리 결과를 3월 31일까지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6월 30일까지 농업환경부 및 분야별 관리부처에 보고함

- (활용) 검증된 인벤토리 결과는 배출할당량 산정, 감축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 대상 선정 및 향후 이행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국가 온실가스 MRV 체계 및 운영 (제9, 10조)

-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의 투명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으로 구성된 국가 MRV 시스템을 운영함
- 농업환경부(MAE)는 국가 MRV 시스템의 주관기관으로서 분야별 관리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감축 결과의 보고·검증 체계를 관리함
- (보고 내용) 대상 시설은 분야별 관리부처의 지침에 따라 감축조치 이행 결과를 측정하고, 감축 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적용 기술, 관리방식 및 감축 결과 등을 포함한 감축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보고 절차) 대상 시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감축보고서를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며(2027년부터), 성급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농업환경부(MAE)에 송부하여야 함
- (활용) MRV 결과는 감축성과의 신뢰성 확인, 국가 감축목표 이행 점검 및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할당체계) 배출할당량 단계별 배분 및 대상시설 기준 (제6조, 제12조)

- (인벤토리 작성 및 할당 대상 선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인벤토리 작성) 의무를 가지며, 관리 부처는 이들 중 배출권 할당 대상을 최종 선정함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CO₂ eq 이상인 시설
 - 연간 에너지 소비량 1,000 TOE 이상인 화력발전소 및 산업 생산시설
 - 연간 연료 소비량 1,000 TOE 이상인 화물 운송업체

- 연간 에너지 소비량 1,000 TOE 이상인 상업용 건물
- 연간 처리용량 65,000톤 이상인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 (단계별 할당 로드맵) 배출할당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대상 업종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함
 - 1단계(2025~2026년): 화력발전소, 철강 생산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등 고배출 3대 산업군을 대상으로 할당량을 시범적으로 배분함
 - 2단계(2027~2030년): 인벤토리 작성 대상 전체 시설로 배분 범위를 확대하며, 2027~2028년과 2029~2030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할당 계획을 수립함
- (할당량 산정 기준) 시설별 배출할당량은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수준(Benchmark), 부문별 성장목표, 감축목표, 시설별 감축잠재량, 기술·재정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현재 제12조는 업종별 세부 산정 기준 및 벤치마크 값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향후 세부 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의사결정 체계) 분야별 관리부처가 할당 대상시설 및 연도별 배분량을 제안하고, 농업환경부(MAE)가 이를 종합·검토하여 총리 승인 후 시설별 배출할당량을 최종 배분함

□ 탄소시장 진입 및 운영 인프라 구축 (제17, 18조)

- (시행 로드맵) 탄소시장 단계적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 (제17조)
 - 2028년 말까지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국내 탄소거래소 시범운영, 국내 탄소크레딧 교환·상쇄 메커니즘 시행 및 시장 참여자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2029년부터 배출할당량 경매제도 도입, 탄소크레딧 및 배출할당량 거래 규정 완비, 세계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인프라 구축) 국가등록시스템 기반의 시장 투명성 확보 (제18조)
 - 농업환경부(MAE)가 주관하에 배출할당량 및 탄소크레딧의 소유권, 계정정보,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등록시스템은 국내 탄소거래소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함
 - 국가등록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정보기술(IT) 인프라, 전용 관리 소프트웨어 및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됨
 - 국가 등록시스템 계정 발급체계(이원화 운영)
 - (직권발급) 배출할당량 대상 시설과 제20조 및 제20a조 제1항 a호 및 b호 메커니즘 참여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등록시스템 계정이 발급됨
 - (신청발급) 제20a조 제1항 c호에 따른 기타 국제 메커니즘 참여 조직은 온라인·우편·직접 방문을 통해 계정을 별도 신청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규정된 기간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함

[참고] 탄소크레딧 인정 메커니즘 분류

- 제20조 베트남 영토 내 기관·조직이 시행하는 국내 탄소크레딧 교환·상쇄 메커니즘
- 제20a조 제1항 a호: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다자 협력 메커니즘
- 제20a조 제1항 b호: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UN 승인 메커니즘
- 제20a조 제1항 c호: 제6.2조 및 제6.4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국제 탄소크레딧 메커니즘

□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및 탄소크레딧 운용 유연성 체계 (제19조)**

- (거래 및 활용) 배출권 거래 및 단위 정의
 - (거래 단위) 배출할당량 및 탄소크레딧은 탄소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할당량 1단위는 1톤 CO₂, 또는 1톤의 CO₂ 상당량으로 규정됨
 - (거래 대상)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출할당량을 공식 배분받은 시설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발급된 국내외 탄소크레

덧(제20조 및 제20a조 제1항 a, b호 해당분)이 포함됨

○ 배출할당량 및 탄소크레딧 운용 유연성 수단

- (할당량 차용) 2030년 말까지 시설은 현 배분기간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기 배분기간에 배정될 자사 배출할당량을 차용할 수 있음. 다만, 차용 가능 물량은 현 배분기간에 배분된 할당량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되며, 차용한 할당량은 거래에 사용할 수 없음
- (할당량 이월) 2030년 말까지 시설은 현 배분기간의 의무 이행량 충족(할당량 소멸) 후 남은 잔여 할당량을 차기 단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된 물량은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함. 배분기간 만료 30일 후에도 이월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이전 단계의 할당량은 국가등록시스템에서 자동 취소됨
- (할당량 상쇄) 시설은 제20조 및 제20a조 제1항 a·b호에 따른 메커니즘에서 발급된 탄소크레딧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으며, 상쇄 한도는 해당 시설에 배분된 배출할당량의 최대 30% 이내로 규정됨 (단, 크레딧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어야 함)

○ 할당량 소멸 및 미이행 시 제재

- (소멸 의무) 배출할당량을 배분받은 시설은 각 배분기간 종료 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의 실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할당량을 국가등록시스템을 통해 소멸(상환)해야 함
- (수량 산정) 소멸해야 할 배출할당량은 해당 시설의 실제 직접배출량에서 상쇄에 사용한 탄소크레딧을 제외한 수량 이상이어야 함
- (탄소크레딧 상쇄 한도) 시설은 외부 감축사업에서 발급된 탄소크레딧을 배출량 상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상쇄 가능 범위는 해당 시설에 배분된 배출할당량의 30% 이내로 제한됨
- (미이행 시 제재 조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벌이 부과되고 소멸되지 않은 배출할당량만큼 차기 단계의 할당량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배출 한도를 축소함

□ 베트남 국내 탄소크레딧 관리체계 및 표준화 절차 (제20조)

○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주체

- (프로젝트 수행 주체) 국내 탄소크레딧 교환·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는 베트남 영토 내 기관 및 조직이 수행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부처) 분야별 관리부처(자원환경부, 공상부, 건설부, 농업농촌개발부, 교통운송부 등)가 소관 분야별로 탄소크레딧 생성 방법론 공인, 프로젝트 등록 및 취소, 참여 주체 변경, 탄소크레딧 발급 권한을 보유함

○ (표준화) 탄소크레딧 생성 방법론(Methodology) 유형

- 탄소크레딧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되어야 함
 - 분야별 관리부처(농업환경부, 공상부, 건설부 등)가 직접 개발하여 공인한 방법론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UNFCCC가 인정하고 관리부처가 채택한 방법론
 - 조직·개인이 제안하여 관리부처 심사를 통과한 방법론

○ (행정 절차) 단계별 소요 기간 및 요건

- 신규 방법론 공인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유효성 검토(3일), 공개 의견수렴(15일), 9인 이상 평가위원회 심사(45일), 최종 결정(5일) 순으로 진행됨. 다만, 조직·개인의 신규 방법론 공인 신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프로젝트 등록은 설계문서, 모니터링 계획,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공개 의견수렴(30일)을 거친 뒤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리부처가 등록 여부를 승인함
- 탄소크레딧 발급은 모니터링 보고서, 감축결과 검증보고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관리부처는 서류 유효성확인

(3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15일 이내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검증 및 투명성) 제3자 검증 체계 및 정보 공시 의무

- (검증 주체 및 범위) 적합성 평가 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성 확인·검증 활동 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전문 검증기관이 프로젝트 등록·조정 신청서류와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검증함
- (검증 기반 신청) 프로젝트 수행기관은 전문 검증기관이 발행한 검증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첨부하여, 소관 관리부처에 프로젝트 등록·조정 또는 탄소크레딧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정보공시) 승인된 모든 방법론, 등록 프로젝트 및 발급 완료된 탄소크레딧 정보는 국가등록시스템 및 관리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투명하게 관리함

□ 통제물질 및 해당 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생산·수입 제한 (제22조)

○ 통제 대상 물질 및 규제 범위

- (통제 대상 물질) 오존층 파괴 물질(ODS*) 8종 및 지구온난화 유발 물질(HFC)

* ODS : Bromochloromethane, CTC, CFC, Halon, HBFC, HCFC, Methyl bromide, Methyl chloroform

- (규제범위 확대) 통제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를 넘어, 이를 냉매·발포제 등으로 포함하거나 제조 공정에서 사용한 모든 장비 및 완제품 까지 생산·수입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 (부록 VI 목록 01 참조)

○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퇴출(Phase-out) 로드맵

- (국가 기준소비량 및 산정방식) 베트남의 HCFC 기준소비량은 ODP 환산 기준 221.2톤이며, 단계별 감축목표는 이를 기준으로 적용됨. HCFC의 국가 총소비량은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차감한 순소비량으로 산정함
- (단계별 퇴출 로드맵) HCFC는 베트남 내 국가 총소비량을 기준

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2040년부터 완전 퇴출됨

- 1단계 (2022년~2024년): 기준소비량의 65% 이내로 제한함
- 2단계 (2025년~2029년): 기준소비량의 32.5% 이내로 제한함
- 3단계 (2030년~2039년): 연평균 기준소비량의 2.5% 이내로 대폭 제한함
- 4단계 (2040년 1월 1일부터): 모든 HCFC 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퇴출함

○ 기타 물질별 관리 기준 및 수입 금지 예외 조항

- (Methyl bromide 용도 제한) 수출입 화물의 소독 및 검역(QPS) 등 국제 교역에 필수적인 특수 목적으로만 제한적 수입이 허용됨
- (수입 금지 예외 조항) 항공 소방용 재활용 물질,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미량의 불순물, 또는 국방·안보 및 질병 예방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총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통제물질 생산·수입 할당 및 통관 관리체계 강화 (제25, 26조)

○ 통제물질 생산·수입 할당량의 배분 및 관리(제25조)

- 오존층 파괴물질(HCFC)의 단계적 퇴출 및 온실가스(HFC)의 단계적 감축 이행을 위해 농업환경부(MAE)가 통제물질의 생산·수입 할당량을 조직별로 매년 배분·관리함
- 할당량은 제22조(HCFC) 및 제23조(HFC)의 국가 단계별 감축 로드맵과 국가 총소비량 한도, 조직별 사용 수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 물질별 ODP·GWP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최초 배분 시 총 할당량은 국가 소비 한도 내에서 관리되며, 국가 잔여 할당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 배분될 수 있음
- (유효기간) 배분받은 할당량은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추가·조정 배분) 신규 등록 조직, 저GWP(낮은 온난화 지수) 통제물질 사용 조직, 기존 배분 조직의 추가 수요 등이 있는 경우 잔여 국가 할당량 범위 내에서 할당량을 추가 또는 조정 배분할 수 있음

- (위반 시 조치) 할당량 없이 통제물질을 수입하거나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수입하는 경우 행정제재, 할당 취소 또는 차년도 할당량 축소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통제물질 할당량 신청 및 통관 연계 절차 (제26조)

- (디지털 행정 통합) 할당량 배분·조정 신청, 결과 통지 등 모든 행정 절차는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됨
- 신청서 접수 및 유효성 검토(3영업일)를 거쳐 최종 할당 결정까지 총 22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농업환경부(MAE)가 관계기관에 의견 협의를 요청한 후 7영업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발급된 할당량 정보는 NSW를 통해 세관 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통관 관리에 활용되며, 할당량 초과 또는 미승인 물량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 통제물질 관리 대상 조직 및 이행 요건 (제24조)

○ 등록 및 보고 대상 범위 (4대 관리 주체)

- 통제물질의 전주기 추적을 위해 아래의 조직은 반드시 자원환경부(MONRE)에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함
 - 통제물질(HCFC, HFC 등)의 생산 및 수출입 조직
 - 통제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장비를 생산·수입하는 조직
 - 규정된 기준 이상의 통제물질 함유 장비를 운영 또는 보유한 조직
 - 통제물질의 수거, 재활용, 재사용 및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

○ 장비 보유 조직의 등록 기준 (규제 대상 시설)

- 통제물질을 포함한 장비를 보유한 조직 중 정격 냉방능력 26.5kW 이상의 에어컨 또는 전기용량 40kW 이상의 산업용 냉동설비를 보유한 경우 등록 대상에 해당함

- 장비 기준이 기존 ‘초과’ 에서 ‘이상’ 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준 값에 해당하는 장비도 등록 대상에 포함됨

○ 주요 이행 사항 및 행정 절차

- (등록 신청) 대상 조직은 활동 개시 또는 장비 설치 즉시 국가단일창구 (NSW)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관리 부처는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함
- (정기 보고) 모든 등록 조직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통제물질 생산·수출입·사용·수거·재활용·파기 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 공표) 당국은 등록 확인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직 명단과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사회적 감시 및 투명성을 강화함

□ 통제물질 전주기 관리 및 사후 관리 책임 확대 (제27, 28조)

○ 국가 계획의 관리범위 확대 (제27조)

- 베트남은 오존층 보호 국가계획의 관리 범위를 통제물질 자체에서 통제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장비까지 확대함
- 국가계획에는 통제물질의 관리·감축·퇴출 방향과 함께, 관련 제품·장비에 포함된 통제물질의 관리·퇴출 로드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또한 지속가능한 냉각(Sustainable Cooling) 목표와 연계하여, 냉방·냉동 장비의 사용 단계뿐 아니라 폐기 단계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소형 가전 대상 냉매 회수 처리 책임 확대 (제28조)

- 2028년 1월 1일부터 정격 냉방능력 26.5kW 미만인 소형 가전(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제조·수입하는 조직에도 냉매 관리 책임이 전면 적용됨
- (책임 범위) 해당 제품의 수명 종료(폐기) 시, 내부에 포함된 통제물질

(냉매)을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수거(Collection)하여 재활용(Recycling), 재사용(Reuse)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하게 파기(Destruction) 처리해야 함

□ 거버넌스 개편 및 인센티브 체계 (제29, 33조)

○ 농업환경부(MAE) 중심의 통합 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제29조)

- 농업환경부(MAE)는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 총괄기관으로서, 통제물질의 생산·수입 할당, 등록·보고, 수거·재활용·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주관함
- (범부처 협업) 농업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통제물질 관리 이행체계를 구체화함
 - 기술자 교육 및 자격 인증 (MOET 협업): 통제물질 함유 장비(냉동·공조 등)의 설치, 유지보수, 수리 기술자는 관련 전공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기술 기준 및 안전 관리: 농업환경부는 통제물질의 수거·운반·보관·재활용·재사용 및 처리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과 관련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관리함
 - 수출입·통관 거버넌스 (MOIT, MOF 협업): 공상부(MOIT)와는 수출입 금지 및 조건부 허용 품목 목록을, 재무부(MOF)와는 HS 코드 체계를 협의하여 통관 관리를 지원함

○ 친환경 기술 도입 및 감축 활동에 대한 우대 정책(제33조)

-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 냉각(Sustainable Cooling), 오존층 보호 및 통제물질 재활용·처리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 이전 및 적용 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Low-GWP) 대체 기술 도입, 통제물질 회수·재활용·처리 서비스 제공 등은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따라 장려됨

※ 본 규정은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 제도가 아니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운영 및 오존층 보호 이행을 위해 관련 시설·조직의 등록, 보고, 배출할 당량 배분, 검증, 탄소크레딧 발급 및 통제물질 관리 절차를 규정함

□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관련 절차

○ 배출할당량 배분

- 2025~2026년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배분하며, 2027~2030년에는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농업환경부(MAE)가 분야별 관리부처의 제안을 검토한 후, 총리 승인을 거쳐 시설별 최종 할당량을 결정 및 배분함

○ 할당량 운영 및 유의사항

- 2030년까지는 미사용 할당량을 다음 배분기간으로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음 배분기간 할당량의 최대 15%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으나, 차입분은 거래할 수 없음

○ 할당량의 반납 및 상쇄

- 할당 대상 시설은 배분기간 종료 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직접 배출량에 상응하는 할당량을 국가등록시스템을 통해 소멸시켜야 함
- 탄소크레딧을 활용한 상쇄는 배분받은 할당량의 최대 30% 이내에서 가능함
- 소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 분야 행정제재가 부과되며, 부족분은 다음 배분기간 할당량에서 차감됨

□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등록 및 발급 절차

○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등록

- 신청자는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등록 신청서, 프로젝트 설계문서, 모니터링 계획,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등록 과정에서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공인 검증기관의 문서 검증을 거쳐 농업환경부(MAE) 또는 관리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탄소크레딧 발급 및 거래 관리

- 등록된 프로젝트의 탄소크레딧 발급은 모니터링 보고서, 감축결과 검증보고서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근거로 관할 관리부처가 검토하여 결정함
- 탄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탄소크레딧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의 규모, 용량 또는 시행 주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여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소멸)한 크레딧은 이후 시장에서 재거래할 수 없음
- 탄소크레딧의 발급, 보유, 거래 및 사용 이력은 국가등록시스템을 통해 관리됨

□ 통제물질 등록·보고 및 할당

○ 등록 대상 및 보고 의무

- HCFC, HFC 등 통제물질의 생산자, 수출입자, 통제물질 포함 제품의 제조·수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장비 보유 조직은 등록 대상에 해당함
- 장비 보유 기준은 정격 냉방용량 26.5kW 이상 에어컨 또는 전기 출력 40kW 이상 산업용 냉동설비임

- 등록 대상 조직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통제물질 생산, 수출입, 사용, 회수, 재활용 및 처리 실적을 농업환경부(MAE)에 보고해야 함

○ 생산·수입 할당량(Quota) 관리

- 할당량은 해당 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음
- 할당량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7월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준 이상의 장비 소유자는 기기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해당 물질을 반드시 수거(Collection)해야 함
- 허위 보고 또는 할당량 불법 양도 시 할당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및 검증체계**

○ 제3자 검증기관의 역할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탄소크레딧 감축 결과 검증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인 제3자 검증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함
- 검증기관은 프로젝트 문서와 실제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검증보고서를 발행함

○ 통합 관리체계

- 농업환경부(MAE)는 온실가스 감축 MRV 체계, 국가등록시스템, 탄소시장 운영 및 통제물질 관리를 총괄함
- 산업무역부, 건설부 등 분야별 관리부처는 소관 분야의 배출권 할당, 보고, 검증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함

□ **적합성평가 기관**

-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감축결과 검증 및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검증은 베트남 적합성평가 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검증

기관이 수행함

- 구체적인 기관명은 본 시행령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 시 농업환경부 또는 분야별 관리부처가 공표한 등록 검증기관 목록을 확인해야 함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한국

- (현행 규정) 온실가스 목표거래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이며, 전환·산업 등 주요 배출부문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 거래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함
- (도입동향)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총배출허용량 설정, 시장안정화 예비분 도입,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조정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베트남 규제와 유사하게 배출권 할당, 배출량 검증, 배출권 제출 및 외부감축실적 활용 제도를 운영 중이며, HFC 등 오존층 보호 및 불소계 온실가스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생산·소비 상한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또한 냉매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회수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J-Credit 제도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인증하고, 해당 크레딧을 탄소상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 (도입동향) GX-ETS는 2023~2025년 자발적 참여 단계로 운영된 후, 2026년 4월부터 의무적 기준·크레딧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력 부문 고배출 기업에 대한 유상할당은 2033년부터 도입될 예정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프론류의 사용 합리화 및 관리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CFC, HCFC, HFC 등 불소계 물질의 제조, 사용, 회수 및 폐기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정)** EU는 EU ETS를 통해 전력, 에너지 집약 산업, 항공 및 해운 부문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F-gas 규정(EU 2024/573)을 통해 HFC 등 불소계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및 장기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음
- **(도입동향)**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대상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 부담 체계가 적용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베트남 시행령의 통제물질 생산·수입 쿼터제 및 냉방·냉동장비 관리 규정은 EU의 F-gas 쿼터, 사용제한 및 사업자 관리의무와 유사한 규제방향을 보임. 또한 EU는 2024년 탄소제거 인증체계(CRCCF)를 채택하여 영구 탄소제거, 탄소농업 및 제품 내 탄소저장에 대한 자발적 인증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일본	EU
상위 법·프레임	환경보호법(2020), 시행령 제06/2022/NĐ-CP 개정 통합본	온실가스 목표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관련 법령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GX-ETS, J-Credit, 프론류 배출억제법	EU ETS 지침, CBAM, F-gas Regulation (EU) 2024/573
주요 규제부처	농업환경부(MAE), 산업무역부(MOIT), 건설부 등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	유럽위원회(EC), 회원국 관할당국
규제 성격	제품 인증이 아닌 배출권 할당, 탄소크레딧 발급, 통제물질 등록·보고 절차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냉매 관리	GX-ETS, J-Credit, 프론류 관리	EU ETS, CBAM, F-gas 쿼터·사용제한
주요 대상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시설 및 통제물질 생산·수입·사용 조직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특정물질 제조·수입자	GX-ETS 대상 기업, J-Credit 사업자, 프론류 관련 사업자	ETS 대상 산업, CBAM 대상 수입자, F-gas 제조·수입자
배출권거래제	2025~2026년 화력발전·철강·시멘트 우선 배분, 2027~2030년 확대	K-ETS 운영,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추진	GX-ETS 2026년 의무적 기준·크레딧 방식 전환	EU ETS 운영, 전력·산업·항공·해운 등 대상
할당·제출 의무	배분기간 종료 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할당량 반납	검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대상 기업의 배출목표 이행 및 크레딧 활용	검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2030년까지 미사용 할당량 이월 가능, 다음 배분기간 할당량의 최대 15% 차입 가능	배출권 이월·차입 제도 운영	크레딧 활용 중심으로 운영	배출권 이월 가능, 차입은 제한적
탄소크레딧	국내외 감축사업 등록·검증 후 크레딧 발급	외부사업 감축실적 인증제도 운영	J-Credit 제도 운영	탄소제거 인증체계(CRCF) 도입
상쇄 활용	탄소크레딧으로 할당량의 최대 30%까지 상쇄 가능	외부감축실적 활용 가능	J-Credit 등 활용 가능	국제크레딧 활용은 제한적
통제물질 관리	HCFC, HFC 등 생산·수입·사용·회수·재활용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 관리, 냉매 회수·처리 관리	CFC, HCFC, HFC 등 프론류 제조·사용·회수·폐기 관리	HFC 쿼터, 사용제한, 누출점검 및 회수 의무

	등록 및 보고			
장비·시설 기준	26.5kW 이상 에어컨, 40kW 이상 산업용 냉동설비 보유 조직 등록 대상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냉매 관리 대상 설비	프론류 사용·회수 대상 장비	F-gas 사용 냉동공조·히트펌프 등
보고 의무	등록 조직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통제물질 실적 보고	배출량 명세서 및 배출권 제출	프론류 충전·회수량, J-Credit 관련 실적 보고	CBAM 보고, F-gas 생산·수입·수출 보고
필요조치	통제물질 생산·수입 할당량 확보, 조직 등록, 국가등록시스템 계정 확보	배출권 할당 신청,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마련	GX-ETS 대상 여부 확인, J-Credit 또는 프론류 관리체계 구축	F-gas 수입 쿼터 확보, CBAM 신고인 등록
적합성 문서	통제물질 실적보고서, 배출량·감축결과 검증보고서	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보고서, 외부감축실적 인증서	프론류 관리기록부, J-Credit 인증서	CBAM 보고서, F-gas 쿼터 증빙, ETS 검증보고서
인증·마크	제품 인증마크 없음. 국가등록시스템 등록 및 크레딧 발급 중심	제품마크보다 배출권·감축실적 인증 중심	J-Credit 인증 및 프론류 관리 증빙 중심	CE와 별개로 ETS·CBAM·F-gas 등록·보고 중심
수입자·책임자 의무	통제물질 수입자는 할당량 확보, 등록 및 연간 실적 보고 필요	특정물질 제조·수입 신고 및 배출권 제출 의무	프론류 제조·수입·회수 관련 의무	CBAM 대상 수입자는 내재배출량 보고, F-gas 수입자는 쿼터 준수
필수 증빙 문서	제3자 검증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통제물질 실적보고서	배출량 검증보고서, 배출권 제출자료	충전·회수 증명서, J-Credit 관련 문서	ETS 검증보고서, CBAM 보고서, F-gas 쿼터 증빙
사후관리	MAE 및 분야별 부처가 보고, 검증, 반납, 통제물질 관리 감독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배출량·배출권 이행 관리	METI·환경성이 GX-ETS 및 프론류 관리 감독	EC 및 회원국이 ETS, CBAM, F-gas 이행 감독
위반 시 조치	할당량 미반납 시 행정제재 및 차기 할당량 차감, 허위보고·불법양도 시 할당 취소 가능	배출권 제출 미이행 시 과징금 등	프론류 관리 미흡 또는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CBAM·F-gas 위반 시 과징금 등
최근 개정·전환 포인트	2025·2026년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탄소크레딧, 통제물질 관리 절차 구체화	제4차 K-ETS 계획기간(2026~2030)에서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 고도화	GX-ETS가 2026년 의무적 기준·크레딧 방식으로 전환, 전력부문 유상할당은 2033년부터 예정	CBAM은 2026년 확정단계 시행, F-gas Regulation 2024/573으로 HFC 규제 강화
실무 리스크	국가등록시스템 등록 누락, 검증보고서 미비, 할당량 미반납, 통제물질 쿼터 초과	배출량 산정 오류, 배출권 부족, 외부감축실적 인정 지연	GX-ETS 목표 미달, J-Credit 인정요건 미충족, 프론류 회수기록 미비	CBAM 내재배출량 산정 오류, F-gas 쿼터 부족, HFC 사용제한 위반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 본 규제는 2022년 시행된 시행령(제06/2022/ND-CP호)을 기반으로 2025년(제119/2025/ND-CP호) 및 2026년(제83/2026/ND-CP호) 개정을 통해 탄소시장 운영, MRV 체계 및 통제물질 관리 범위를 강화한 통합 개정 시행령임
- 또한 관리체계를 농업환경부(MAE)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운영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함
- 탄소거래소 및 국가등록시스템 도입을 통해 배출권·탄소크레딧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MRV 체계 고도화를 통해 감축 데이터의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을 강화함

○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및 대응 요구사항

- (행정 주체 변경 및 보고체계 단계화, 제9~11조) 기존 천연자원환경부(MONRE) 중심의 관리체계가 농업환경부(MAE) 주관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인벤토리 관련 행정 소통 창구가 변경됨. 또한 사업장은 감축 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2027년부터 시행)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검토·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MAE에 송부하는 단계적 보고체계가 명확화되어 지자체와의 사전 협력 필요성이 커짐
- (탄소시장 유연성 제도 구체화, 제19조) 배출할당량 부족 시 탄소크레딧을 활용한 상쇄 한도가 기존 10%에서 배출할당량의 30% 이내로 확대되어 기업의 배출량 대응 수단이 확대됨. 또한 2030년까지 배출할당량의 15% 이내 차입 및 반납 후 남은 미사용 배출할당량의 차기 배분기간 이월이 허용되어, 기업의 배출량 관리 및 할당량 운용 전략 수립이 중요해짐

- (통제물질 관리 강화, 제22·24조) HCFC 관리는 단순 수출입 금지 중심에서 2040년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 단계적 감축 체계로 강화됨. 또한 통제물질 함유 장비 등록 기준이 기존 ‘초과’에서 ‘이상’으로 조정되어, 정격 냉방능력 26.5kW에 해당하는 장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됨
- (소형 가전 제조·수입자 책임 확대, 제28조) 2028년 1월 1일부터 정격 냉방능력 26.5kW 미만 장비·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도 폐기 단계의 통제물질 회수·재활용·처리 책임이 확대 적용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현지 수거·처리 업체 확보, 서비스망 구축 및 비용 반영 등 사후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 (행정적 부담) 규제 대상 조직 및 시설은 통제물질 실적보고, 감축 실적보고, 인벤토리 보고 등 반복적인 행정 의무를 이행해야 함. 특히 배출할당 대상 시설은 제3자 검증을 거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담 행정 인력 확보 및 검증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적 전환) HCFC의 2040년 완전 퇴출 로드맵 및 HFC 감축 체계에 따라, 냉매·발포제 등 통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저GWP 대체물질 전환, 공정 개선 및 관련 기술자 자격요건 충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관 리스크 및 행정 예측성) 통제물질 생산·수입 할당량 관련 절차가 국가단일창구(NSW) 및 세관 시스템과 연계됨에 따라, 할당량 미확보 또는 초과 시 통관 제한·지연 가능성이 있음. 다만 관계 기관이 7영업일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행정 예측성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 범위 재점검) 통제물질 규제는 베트남 내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적용되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의 냉매 성분, 정격 냉방능력 및 통제물질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가 등록·보고·회수처리 책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할당량 전략 수립) 베트남 내 배출할당 대상 시설은 탄소크레딧 상쇄 한도 확대, 할당량 차입 및 이월 제도를 고려하여 배출량 관리, 할당량 확보, 외부 크레딧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거버넌스 대응) 주관 부처가 농업환경부(MAE) 중심으로 개편되고 국가단일창구(NSW) 기반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를 통해 관련 계정 등록, 할당량 신청, 실적보고 및 통관 연계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전체 (통제물질 생산·수입·수 출·사용기업 또는 통제물질 포함 장비·제품을 보유·취급하 는 기업)	통제물질 등록·보고·할당 량 관리 및 회수처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CFC/HFC 등 통제물질 사용 여부 및 포함 제품·설비 전 수조사 - 생산·수입 할당량 신청, 배정, 조정·추가 신청 절차 대응 - 최근 3년 사용량 및 수입·생산 실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매년 통제물질 사용현황 보고 체계 마련 - 냉동·공조 설비 기준 해당 여부 확인 및 등록 대상 식별 - 설치·수리·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제물질 회수 절차 마련 - 재활용·재사용 가능 여부 판단 및 불가 시 유해폐기물 기준에 따른 처리체계 구축 - 회수기, 저장탱크, 진공펌프, 누출검사 장비 등 필수 장비 확보 - 통제물질 취급 기술자 교육·자격 요건 관리 - HCFC 완전 퇴출 및 HFC 단계적 감축에 대비한 대체물질·대체공정 전환계획 수립
전체 (베트남 내 사업장 중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기준에 따라 인벤토리·감 축·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기업)	MRV·인벤토리· 배출권 할당 대응 및 탄소시장 활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000 tCO₂eq 이상 또는 1,000 TOE 이상 등 적용 기준 해당 여부 사전 진단 - 사업장 단위 온실가스 배출원 및 활동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2년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대응 - 배출계수, 활동자료, 산정방법 등 검증 가능한 데이터 관리 - MRV 체계 구축, 측정, 보고, 검증 절차 내재화 - 성급 인민위원회 및 농림환경부 보고 일정 대응 - 배출권 할당 대상 여부 확인 및 할당량 대비 배출량 관리 - 할당량 초과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감축계획 수립 - 탄소크레딧 구매·상쇄 활용 전략 마련 - 배출권 이월·차입 등 유연성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 국가등록시스템 및 탄소거래소 연계에 대비한 탄소자산 관리체계 구축 - 설비 효율화, 저탄소 공정 전환, 재생에너지 도입 등 감축 투자계획 수립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참고자료** **참고자료**

연번	인용법령(국문)	인용법령(원어)
1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số 72/2020/QH14
2	정부령 제06/2022/NĐ-CP호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Nghị định số 119/2025/NĐ-CP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2022/NĐ-CP
3	정부령 제06/2022/NĐ-CP호 및 제119/2025/NĐ-CP호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83/2026/NĐ-CP호	Nghị định số 83/2026/NĐ-CP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2022/NĐ-CP,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ởi Nghị định số 119/2025/NĐ-CP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호	Nghị định số 06/2022/NĐ-CP quy định giảm nhẹ phát thải khí nhà kính và bảo vệ tầng ô-dôn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가. 독립 - 자유 - 행복

2. 시행령

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것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발효되며 다음 규정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다:

1.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였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2.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Đ-CP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2020년 11월 17일자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이 시행령을 공포한다¹.

¹ 1.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2025년 6월 9일)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그 제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5년 2월 18일자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17일자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농림환경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을 공포한다.”

2.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Đ-CP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83/2026/NĐ-CP호(2026년 3월 23일)는, 정부령 제119/2025/NĐ-CP호(2025년 6월 9일)에 의해 개정·보완된 바, 그 제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조직법 제63/2025/QH15호에 근거하여;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제91조,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제92조, 탄소 시장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제139조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²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 탄소 시장의 조직 및 개발, 국내외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의 이행;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되는 온실가스의 생산, 수입, 수출, 소비 및 처리에 관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인위적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자연,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관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산하 기구이다.

2.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중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규제 물질’)의 틀 내에서 규제되는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A, B, C, E 및 F에 규정된 물질 및 화합물이다.

3. 산업 공정은 에너지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화학적·물리적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활동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개정 및 일부 조항이 법률 제11/2022/QH15호, 법률 제16/2023/QH15호, 법률 제18/2023/QH15호, 법률 제47/2024/QH15호, 법 제54/2024/QH15호 및 법 제146/2025/QH15호;

데이터 기반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축소를 규정하는 정부 결의 제66.7/2025/NQ-CP호에 근거하여;

농림환경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

정부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을 공포한다. 상기 정부령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19호(2025년 6월 9일)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정부령 제06/2022/ND-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부령을 공포한다.”

²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을 포함하여 인류가 지구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 관련 국제 조약이다.

5. 탄소 크레딧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또는 베트남에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등록·이행하고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할당된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5a³ . 파리협정 제6조 제2항 메커니즘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이다. 파리협정 제6조 제2항의 메커니즘은 각국이 국가자발적기여(NDC)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인 탄소 크레딧을 양자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b⁴ . 파리협정 제6조 제4항의 메커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이다. 파리협정 제6조 제4항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 내의 기관이 UNFCCC가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심사를 거친 후 해당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해 탄소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국가자발적기여(NDC)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후 대응에 대해 약속한 기여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적응 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포함합니다.

7.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 저장, 제공,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a) 측정은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의 감축량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³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2항 a호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항 a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⁴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항 b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b) 보고서는 관할 기관이 제정한 지침, 절차 및 양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측정 결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산출, 종합하고 제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c) 검증이란 관할 기관이 제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8. 기준 배출 전망(BAU)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일반적인 경제·사회 발전 조건 하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정이다.

9.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관할 기관이 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범위와 특정 연도 내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10.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의 생산과 소비를 금지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11. 정격 냉동 능력은 표준 조건에서 냉동 장비 또는 공조기의 냉각 능력을 말하며, 제조업체의 라벨에 기재되어 있다.

12⁵ . 탄소 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을 집중적으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13. 규제 물질의 재활용이란 기술적·공학적 해결책을 통해 규제 물질로부터 성분을 회수하여 원래 물질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처리 과정을 말한다.

14. 규제 물질의 재사용이란, 해당 물질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세척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CO₂ 환산 톤은 해당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지수(GWP)에 따라 CO₂ 톤으로 환산된 온실가스의 질량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규정한다.

⁵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파리협정은 2021년부터 발효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국가별 자발적 기여(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적응에 관한 회원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7. 규제 물질의 회수란 규제 물질을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외부 저장 용기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18⁶.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란 탄소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을 매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규제 물질의 처리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적·공학적 해결책을 통해 규제 물질을 파기하는 과정이다.

20⁷. 지속 가능한 냉방이란 건축물 및 도시 지역에서 기후 친화적인 냉방 솔루션을 적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낮거나 “0”인 규제 물질의 사용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21⁸.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가 등록 시스템(이하 ‘국가 등록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관리, 운영, 갱신 및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기술(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요소를 종합한 시스템이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차용, 납부, 양도, 상쇄 활동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22⁹. 국내 탄소 크레딧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은, 해당 프로젝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⁶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항 d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 d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⁷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⁸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항 e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 e호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이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⁹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항 g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 가호 규정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의 원칙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는 저탄소 경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된 녹색 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사회적 여건, 현행 법률 및 관련 국제 규정과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의 관리는 책임, 통일, 공정,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총리가 국가 발전 우선순위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조정한다.

3.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 활동은 탄소 시장 내 주체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화시키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4.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의 수입·수출은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과만 해당 의정서가 정한 일정에 따라 허용된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 시장의 조직 및 발전

제1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5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 대상

1. 총리가 공포한 온실가스 배출 분야 및 배출 시설 목록에 포함된 시설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 에너지, 농업, 토지 이용 및 임업,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¹⁰, 건설부¹¹이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 및 개인은 자신의 여건과 활동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¹⁰⁾ “농림부” 및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¹¹⁾ “교통부”라는 용어는 “건설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6조.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대상 분야 및 시설 목록의 수립 및 갱신

1. 온실가스 배출 시설 중 온실가스 인벤토리⁷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co₂ 환산량 이상인 시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a)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이 1,000톤 석유환산량(TOE) 이상인 화력발전소 및 산업 생산 시설;
- b) 연간 총 연료 소비량이 1,000 TOE 이상인 화물 운송 사업자;
- c)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이 1,000 TOE 이상인 상업용 건물;
- d) 연간 처리 용량이 65,000톤 이상인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2. 농림환경부¹²는 이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 및 도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상 분야 및 시설 목록을 검토, 종합, 수립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총리에게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상 분야 및 시설 목록의 갱신을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3. 도급 인민위원회는 소속 관련 전문 기관에 2년마다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 연도의 전년도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분야 및 시설 목록에 포함된 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용량, 규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b)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대상 온실가스 배출 시설 목록을 갱신 및 조정하여, 2023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환경부¹³ 및 관련 분야 관리 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로드맵 및 방식

1¹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국무총리가 국가자발적기여(NDC)에서 승인한 것으로, 다음의 목표를 포함한다

¹²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¹³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¹⁴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3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3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에너지, 농업, 토지 이용 및 임업,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여건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2. 농림환경부¹⁵는 주관을 맡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자발적기여(NDC)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는 2030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관할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2025년까지의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자발적기여(NDC)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은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및 다음의 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시설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정보 및 활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설의 구체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수립 및 이행한다;

b¹⁶) 2025년부터 203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배정받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지 않은 사업장은 이 법령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5.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술, 생산 공정,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적용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법률 및 국제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력 메커니즘 및 방식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

¹⁵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¹⁶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항 제3호 b목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b) 분야별 및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 c)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술, 생산 공정 및 서비스;⁹
- d)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법률 및 국제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력 메커니즘 및 방식.

제8조. 온실가스 흡수 증진

1. 국가로부터 산림을 양도받거나 임차한 기관,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 조림을 위해 토지를 양도받거나 임차한 자;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자생 복원·개발하거나, 양도·증여·상속받은 자가구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산림의 피복률·생물량 및 품질을 보호·향상시켜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증대할 책임이 있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및 국제 탄소크레딧 거래·상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3. 농림환경부¹⁷는 주관을 맡아,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피복률·생물질 및 품질의 보호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증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본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통합한다;

b¹⁸) 생태 지역별 및 각 성, 중앙 직할시별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산정하고, 본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보고서에 이를 종합한다;

c¹⁹) 매년 전국 범위 내에서 각 성, 직할시별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보호 및 산림 피복률, 생물량,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증진 활동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¹⁷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¹⁸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4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4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¹⁹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4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d²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피복률·생물량 및 품질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시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⁰ 활동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는 방법의 수립을 주도하여, 국내 탄소 크레딧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의 시행을 지원한다.

4²¹. (폐지됨).

제9조. 온실가스 감축 측정, 보고, 검증 국가 시스템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의 추적 및 감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정, 보고, 검증 국가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

2²². 농림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보고·검증 국가 시스템의 주관 부처로서, 이 법령 제10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보고·검증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책임을 지며; 건설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검증에 관한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한다.

3.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관할 분야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검증에 관한 절차 및 기술 규정을 수립하고 공포할 것;

b) 관할 분야 내의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c) 관할 범위 내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및 검증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d) 관리 분야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며, 이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에 관한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되어야 한다.

²⁰ 이 호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4항 b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²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4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4항 c호에 따라 폐지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²²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5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관련 부처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농림환경부²³ 및 이 법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 차원 및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b) 농림환경부²⁴ 및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와 협력하여, 각 부처는 관할 분야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심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5. 도급 인민위원회는 소속 관련 전문 기관에 다음 사항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a²⁵) 관할 구역 내 본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검증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감독하고;

b) 농림환경부²⁶ 및 이 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 및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보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6²⁷)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검증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농림환경부 및 이 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 및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보고, 심사에 필요한 활동 정보 및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및 검증 활동의 내용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및 검증 요건

a) 측정은 다음의 측정, 보고, 검증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²³ “자연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²⁴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²⁵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5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5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²⁶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²⁷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5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5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할 기관이 제정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연속성 및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측정 방법은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규정에 기초하여 베트남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정한다;

b)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고서는 측정 방법, 활동 데이터, 적용된 배출 계수, 기술적 해결책,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관리 방식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의 포괄성을 보장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한 측정·보고·검증 절차에 규정된 양식,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c²⁸)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정

a)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은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이행 결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b)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는 관할 범위 내의 정책, 법령, 전략, 프로그램, 계획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포함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의 이행 성과를 측정·평가한다.

3²⁹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고서

a)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은 이령에 첨부된 부속서 III의 양식 제02호에 따라 보고 기간 전년도에 대한 연간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7년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도급 인민위원회는 이 규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를 접수, 검토 및 종합하여 2027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는 부속서 제01호 양식에 따라 매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고서를 작성한다.

²⁸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6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6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²⁹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6항 b호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법령에 첨부된 제3호 보고서를 2024년부터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13

d) 농림환경부는 분야별 및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감축 보고서를 검토·통합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4³⁰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심사

a) 이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각 부처가 수행하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 2023년부터 매년 각 부처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여 농림환경부에 제출하여 종합하도록 한다.

검증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가 해당 분야의 전략, 계획,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 기간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기준 배출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 및 완전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량화 방법의 타당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계획 기간 내 기준 배출 전망과의 비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에 대한 이중 계산 가능성;

b)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검증은 농림환경부가 주재하고 각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적 약속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국가보고서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농림환경부는 이 조항 제3항 c호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위원, 심사 위원 2명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이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의 대표 및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회의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 회의에 참여)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이 중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서기위원 및 최소 1명의 반론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³⁰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6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6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의장에게 위임한다; 이사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고, 이사회 회의를 종결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의 완전성과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의 내용, 정보, 데이터의 충실성;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의 국가 전략, 계획,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조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량화 방법의 타당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계획 기간 내 국가의 일반적 발전 시나리오와의 비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에 대한 이중 계산 가능성.

심사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는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승인하여 농림환경부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의 미비점 및 한계;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종합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권고 사항;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결론(승인, 수정 후 승인, 불승인 중 하나).

농림환경부는 심사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보고서를 보완한다.

제11조. 온실가스 인벤토리

1.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관한 요건

a)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b)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에 사용되는 활동 데이터는 연속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증,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c)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인벤토리 방법, 활동 데이터, 적용된 배출계수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d³¹) 제

³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7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119/2025/ND-CP호(2022년 1월 7일)의 제1조 제7항 a호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항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사업장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심사하며, 이는 이 조항 제6a항에 규정되어 있다.

d)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및 분야별 정보는 기후변화 및 관련 분야를 관장하는 국가 관리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된다;

e³²) 시설의 2년 주기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전후하는 2년 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포함한다.

2. 농림환경부³³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주관 기관으로서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동을 주관하고, 규정에 따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시설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주기를 확정하며;

b)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침에 따라 국가 및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을 보급하며;

c³⁴) 분야 관리 부처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의정서 지침에 부합하는 기초 수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을 보급한다;

d³⁵)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배출계수 목록을 갱신하고 공표한다;

d)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품질을 관리·보장하고,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검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초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검증 절차를 규정한다;

e³⁶) 주관을 맡아 건설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들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활동 현황 및 결과를 갱신한다

³² 이 항목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7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1항 제7호 b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³³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³⁴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7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1항 제1호 c목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³⁵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7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7항 제1호 c목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³⁶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7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관련 정보를 기후변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3. 이 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실시하고,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I의 양식 제01, 02, 03, 04, 05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부터는 보고 기간의 1월 31일 이전에 농림환경부³⁷에 제출해야 한다;

b³⁸) 2022년도 관리 범위 내 시설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실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조직하여 수행하며, 2023년 12월 1일 이전에 시설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농림환경부에 제출하고, 관리 범위 내 시설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을 제정한다;

a)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분야 내에서 점검한다;

b) 농림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³⁹ ;

d) 관리 분야 내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4⁴⁰ .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지침에 따라 2022년도 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에 필요한 활동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2024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설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하고, 본령 부속서 II의 양식 제06호에 따라 작성된 시설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2025년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 화력발전소, 철강 생산 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

³⁷ “자연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³⁸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7항 d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7항 d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³⁹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⁴⁰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7항 가호에 따라 개정·보완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7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개정·보완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총리가 공포한 온실가스 배출 시설 목록에 속하는 시설은 2026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I의 양식 제06호에 따라 시설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호에 규정된 시설은 이 항 b호의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d) 본 항 c호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시설 중 2027년부터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2028년 이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I의 양식 제06호를 따라야 한다. 본 호에 규정된 시설은 본 항 b호의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5⁴¹ . 이 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가 수행하는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심사를 실시한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내용,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성;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의 적정성;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 적용된 배출계수, 품질 관리 방법, 품질 보증 및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데이터 시스템의 적절성;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6⁴² . 도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이 규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접수, 검토 및 종합하여 2025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환경부 및 해당 분야 관리 부처에 제출한다.

6a⁴³ . 이 조 제4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심사는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기관이 수행한다.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2027년부터 매년 12월 1일 이전에 심사를 마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농림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규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그 결과 검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예산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배정된다.

⁴¹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7항 e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7항 e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⁴²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7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7조 제7항 가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⁴³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7항 h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7항 h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배분⁴⁴

1. 2025~2026년 기간 18

a)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총리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시설 목록에 포함된 화력발전소, 철강 생산 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로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b) 농림환경부가 주관을 맡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건설부와 협력하여 본 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각 화력발전소, 철강 생산 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에 대한 2025년 및 2026년 할당량 배분안을 시범적으로 제안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단계별 및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할당량을 검토·승인받는다. 총리로부터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 총 할당량을 근거로, 농림환경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의 양식 제01호에 따라 각 시설에 할당량을 배분한다.

2. 2027~2028년 단계 및 2029~2030년 단계

a) 각 분야 관리 부처는 총리가 공포한 온실가스 배출 기초목록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배정받을 시설 목록을 제안하고, 각 시설에 대한 연간 할당량을 명시하여 2027~2028년 기간의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9년 6월 30일까지 2029~2030년 기간에 대해;

b) 산업통상자원부와 건설부는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 목록 및 각 화력발전소, 철강 생산 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에 대한 연간 할당량을 갱신하여, 2027~2028년 기간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29~2030년 기간에 대해서는 2029년 6월 30일까지 2029~2030년 기간에 대한 목록을;

c) 농림환경부는 주관을 맡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검토, 평가 및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하며, 총리는 2027-2028년, 2029-2030년 단계 및 매년의 온실가스 총 배출 할당량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총리가 승인한 온실가스 총배출 할당량을 근거로, 농림환경부는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의 양식 제01호에 따라 2027-2028년 단계의 경우 2027년 10월 31일 이전까지, 2029-2030년 단계의 경우 2029년 10월 31일 이전에 각 시설에 할당량을 배분한다.

3.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산정 방법

a)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분야의 성장 목표, 목표

⁴⁴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8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생산·경영 계획에 따른 분야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설의 배출 감축 잠재력;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에 있어 시설의 기술적, 기술적 및 재정적 역량.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산정 방법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의 방법 0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b)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이 항 a호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시설에 할당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산정한다.

4. 배정받은 시설은 이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탄소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5.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행 비용은 국가 예산 관리 체계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배정된다.

제13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대한 요건:

a)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해당 산업·분야의 전략, 계획, 발전 계획;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및 계획 기간 내의 일반적 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b)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해당 시설의 성격, 활동 규모, 생산 능력, 보유 기술 및 생산·경영 계획;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와 계획 기간 내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c) 국가자발적기여(NDC)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또는 기술, 재정, 적용 준비도 조건에 부합하고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기타 조치를 선정;

d)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인정하거나 관할 당국이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정 방법 지침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의 감축량 산정 방법;

d) 측정,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이행 결과의 추적,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는 관할 분야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승인하고, 그중 2025년까지의 단계별 이행 계획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농림

환경부⁴⁵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V의 양식 제01호에 따라 수립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관리 대상 분야의 최근 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 b) 기준 배출 전망 및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 c)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및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가자발적기여(NDC)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d) 실제 상황, 기술 수준, 이행 자원에 부합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분야 발전 전략, 국가 산업 계획 및 정부가 정한 목록에 포함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전문적 성격의 계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와 조화를 이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 d)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방안.

4.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생산 및 경영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
- b⁴⁶) 2026년부터 2030년 말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승인하고, 매년 조정 및 갱신(해당하는 경우)하여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환경부,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 및 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V의 양식 제02호에 따라 수립한다.

- a)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 b)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및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계획 기간 내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⁴⁵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⁴⁶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 2026년부터 203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이행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d) 실제 상황, 기술 수준, 시설의 이행 역량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방안.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의 개정, 보완 및 조정

a) 이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당 산업·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위험이 발생하여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개정·보완·조정한다;

b) 이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은 이 조 제1항 b호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사업장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장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개정, 보완 및 조정한다.

7. 도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규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부처에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의 이행에 참여하고, 관할 구역 내 이 규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 기관⁴⁷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검증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 기관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치 확인 및 검사 확인 활동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이다.

제15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의무

1⁴⁸ . 농림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관리,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검증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 활동을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⁴⁷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⁴⁸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1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11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법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부처는 관할 분야 내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의무가 있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3⁴⁹. 관련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이 법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제2장⁵⁰

탄소 시장의 조직 및 발전

제16조. 국내 탄소시장에서 교환 및 거래 지원 대상⁵¹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대상은 이령 제12조에 규정된 배출권을 배정받은 사업장이다.

2. 탄소 크레딧 교환의 대상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의 기관 및 단체입니다.

3. 거래 지원 대상은 국내 탄소 거래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탄소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제17조. 국내 탄소 시장 발전 로드맵 및 시행 시기⁵²

1. 2028년 말까지의 단계

a) 국가 등록 시스템 구축;

b) 국내 탄소 거래소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⁴⁹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1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11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⁵⁰ 이 항의 제목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⁵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3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⁵²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14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c) 국내 탄소 크레딧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 d) 탄소 시장 발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인식²³ 제고 활동을 전개한다.

2. 2029년부터

- a)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경매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 b) 탄소크레딧 관리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크레딧 거래 활동을 정비하고, 국내 탄소 시장의 조직, 관리, 운영 및 세계 탄소 시장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한다.

제18조. 국가 등록 시스템⁵³

1. 농림환경부는 주관을 맡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등록 시스템을 구축, 관리 및 운영하며, 국가 등록 시스템과 국내 탄소 거래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수행한다. 국가 등록 시스템은 다음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 a)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 b)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 c) 이 시행령 제20조 및 제20a조 제1항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 교환·상쇄 메커니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2. 국가 등록 시스템에서의 계정 등록

a)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 및 본 규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은 농림환경부로부터 국가 등록 시스템 상의 계정을 발급받으며, 해당 정보는 해당 시설 및 기관에 송부된다;

b) 본령 제20조의2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속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직의 경우, 해당 조직은 직접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농림환경부에 계정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1호에 따른 등록 신청서;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련 문서;

⁵³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5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연락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²⁴농림환경부는 해당 기관에 정보 계정을 발급하며, 계정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3. 농림환경부 장관은 국가 등록 시스템의 사용을 규정한다.

제19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의 교환, 차용, 반납, 양도, 상쇄⁵⁴

1. 탄소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은 다음을 포함하여 탄소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

a) 이령 제12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1단위는 1톤의 CO₂ 또는 1톤의 CO₂ 상당량의 배출권을 나타낸다;

b) 2021년 1월 1일 이후 이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메커니즘 및 이 규정 제20a조 제1항 가호, 나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속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에 대해 부여된 탄소 크레딧.

2. 농림환경부는 국가 등록 시스템상 해당 시설의 계정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갱신하고, 동시에 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할당을 수행할 때 탄소 거래소 운영 기관에 데이터를 송부 및 갱신한다.

3.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될 탄소 크레딧의 인증

a) 본령 제20조에 규정된 메커니즘 및 본령 제20a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속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의 경우, 농림환경부는 탄소 거래소 운영 기관에 탄소 크레딧 양에 대한 정보를 송부하여, 해당 기관이 탄소 거래소에 거래 등록 시 조직의 계정에 이를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b) 본령 제20조의2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제도에 속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의 경우, 탄소 크레딧 확인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참여 기관은 직접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농림환경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양식 제02호에 따른 탄소 크레딧 확인 신청서

⁵⁴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6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 양에 대한 메커니즘 관리 기관의 인증. 25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확인된 탄소 배출권 양에 대한 정보를 탄소 거래소 내 신청 기관의 계정으로 전송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탄소 거래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탄소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5. 온실가스 배출권 반납

a) 각 할당 기간에 대해, 사업장은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납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해당 사업장의 할당 기간 동안 직접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에서 상쇄된 탄소 크레딧 양을 차감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사업장은 이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할당 기간의 다음 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직접 반납해야 한다;

c) 농림환경부는 국가 등록 시스템에 제출된 할당량을 취소한다;

d) 국가는 시설이 할당 기간 중 직접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장려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d) 사업장은 본 조 제4항,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교환, 차용, 양도 방식을 적용하고,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함으로써 반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반납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반납하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분량은 해당 사업장의 다음 단계 할당량에서 차감된다.

6. 온실가스 배출권 차용

a) 203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장은 현재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반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다음 단계로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차용할 수 있다

현재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반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차용할 수 있다. 차용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은 해당 단계에 할당된 배출권 양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b) 사업장은 할당된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반납 전에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차용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a) 2030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장은 현재 단계의 할당량 반환을 완료한 후 미사용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할당량은 거래에 사용됩니다;

b) 사업장은 할당된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반납한 후,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이전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할당된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반납 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농림환경부는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이 이전 할당 단계에서 이관되지 않았거나 반납되지 않은 배출권 수량을 소멸 처리하고, 동시에 탄소 거래소 운영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 및 갱신한다.

8. 탄소 크레딧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상쇄

a) 사업장은 본령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1항 가호, 나호에 규정된 탄소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속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크레딧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30% 이내에서 상쇄할 수 있다;

b)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과정에서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한다.

9.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위한 탄소크레딧 거래

a)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란, 이 규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과 이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탄소배출권 교환·상쇄 메커니즘에 속하는 탄소배출권 보유 기관 간의 탄소배출권 매매를 말하며, 본령 제20a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탄소배출권 교환·상쇄 메커니즘에 속하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기관 간의 탄소배출권 매매를 말하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 탄소배출권 교환 활동은 관련 다른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사용

국가는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²⁷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용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없다.

제20조. 국내 탄소 배출권 교환 및 상쇄 제도⁵⁵

1. 국내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제도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베트남 영토 내의 기관 및 조직이다.
2. 국내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제도에 따른 프로젝트 심사 기관
 - a) 심사 기관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 가치 확인 및 검사 확인 활동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이다.
 - b) 심사 기관은 본 조 제6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는 기관의 요청과 본 조 제9항에 규정된 탄소 배출권 발급을 신청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서류를 심사한다.
3.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분야 관리 부처는 다음 사항을 승인·승인한다: 방법 인정;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변경; 프로젝트 등록 취소;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크레딧 발급.
4. 국내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분야 관리 부처가 본령 부속서 V의 양식 제03B호에 따라 수립하고 양식 제03E호에 따라 인정하며, 국가 등록 시스템 및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표하는 방법;
 - b)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방법은 해당 분야 관리 부처가 검토·선정하여 국가 등록 시스템 및 해당 부처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표하는 것;
 - c) 본 항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개인이 제안한 방법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관리 부처가 인정한다.
5. 단체 또는 개인이 제안한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의 인정
 - a)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의 인정을 신청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분야 관리 부처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⁵⁵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17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8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3A호에 따른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 인정 신청서;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3B호에 따른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 문서;

b)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 인정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신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서류의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관 또는 개인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서류 보완 기간은 인정 및 방법 조정 절차 이행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의 인정 및 조정 신청 서류를 해당 부처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게시하여 15일 동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d) 광범위한 의견 수렴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위원, 2명의 심사위원 및 최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해당 분야 관리 부처 산하 관련 기관의 대표 및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평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른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및 프로젝트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측정, 보고, 검증에 대한 기술적 규정 요건 충족;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규모 확장 및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평가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이 중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서기위원 및 최소 1명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를 종결하며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의 완전성과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V의 양식 제03C호에 따른 평가 위원회 구성 결정서, 양식 제03D호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양식 제03E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평가표;

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검토 및 결정한다:

본령에 첨부된 부록 V의 양식 제03E호에 따른 서면으로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 신청을 한 기관 및 개인과 농림환경부에 송부하여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한다.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 인정을 신청한 기관 및 개인에게 보완 및 완비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한다. 기관 및 개인이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을 보완 및 완비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야 관리 부처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의 보완 및 수정 기간은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 인정 절차 이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완 및 수정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의 인정을 심사·결정하고, 해당 결정서를 해당 기관·개인 및 농림환경부에 송부하여 국가등록시스템에 공표한다.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 해당 분야 관리 부처가 인정하고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된 조직 및 개인의 탄소 배출권 생성 방법은, 지적재산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g) 이미 인정받은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본 항에 규정된 탄소배출권 생성 방법 인정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h) 본 항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의 인정 신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6. 국내 탄소 배출권 교환 및 상쇄 제도에 따른 프로젝트 등록

a)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을 선택하고, 본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분야 관리 부처에 다음 중 하나의 방식(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프로젝트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부처 관할 범위에 속하는 다분야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등록 서류를 농림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4A호에 따른 프로젝트 등록 신청서;

본령에 따라 부속서 V에 수록된 양식 제04B호에 따른 프로젝트 설계 자료;

이 시행령에 따라 부속서 V에 수록된 양식 제04C호에 따른 프로젝트 감독 계획;
이 규정 부속서 V에 따라 제4D호 양식으로 작성된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
본령에 따라 부속서 V에 수록된 양식 제04D호에 따른 연락 방법;
현행 법규에 따른 프로젝트의 전문 활동과 관련된 각종 허가증 사본;

b)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기관·단체에 서류의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서류 보완 기간은 프로젝트 등록 및 변경 절차 이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적격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프로젝트 등록 신청 서류를 해당 부처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게시하여 30일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d) 의견 수렴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의견을 종합하여 서류를 제출한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한다;

㉔) 기관 및 단체는 통지된 의견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에 제출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 및 단체는 보완된 프로젝트 등록 신청 서류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4E호에 따른 프로젝트 자료 심사 보고서를 해당 분야 관리 부처에 제출한다.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관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 기간 전, 도중 또는 이후에 프로젝트 자료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 완성된 프로젝트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제안 기관·단체에 서류의 적격 여부에 대해 통지한다.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제안 기관·단체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서류 보완 기간은 프로젝트 등록 및 조정 절차 이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 적격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프로젝트 등록 승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류를 농림환경부 및 관련 기관·단체에 송부한다.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의견 수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h) 관련 기관, 단체 및 분야 관리 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 프로젝트 활동 모니터링 매개변수;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4G호에 따른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등록을 신청한 기관 및 개인에게 송부하고, 농림환경부에 제출하여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한다;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i) 이미 등록된 프로젝트의 규모나 용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조직은 이 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등록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7.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변경

a) 등록된 프로젝트의 투자자인 기관 또는 조직이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분야 관리 부처에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5호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변경 신청서;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4D호에 따른 추가 연락처;

b)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국가 등록 시스템에서 해당 조직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실시한다;

c) 해당 조직은 프로젝트 참여 조정 결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8. 프로젝트 등록 취소

a) 등록된 프로젝트의 투자주체인 기관 또는 단체가 프로젝트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직접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관할 부처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령에 따라 부속서 V의 양식 제06호에 따른 프로젝트 등록 취소 신청서;

본령에 따라 부속서 V에 수반하여 공표된 양식 제04D호에 따른 연락처;

b)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국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조직의 신청에 따라 프로젝트를 등록을 취소한다;

c) 해당 조직은 프로젝트 등록 취소 결정에 따라 법규정에 따라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국내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탄소배출권 발급

a) 등록된 프로젝트의 투자자인 기관 또는 ³²조직은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 등록을 승인한 해당 분야 관리 부처에 탄소 크레딧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7A호에 따른 탄소 크레딧 발급 신청서;

이 시행령에 따라 부속서 V의 양식 제07B호에 따른 프로젝트 모니터링 보고서;

본령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관이 작성한 본령 부속서 V의 양식 제07C호에 따른 프로젝트 감축 효과 심사 보고서;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4D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b)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신청 기관에 서류의 적격 여부에 대해 통지한다.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관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기관이 통지서에 따라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출 시와 같이 서류를 재제출해야 한다;

c) 적격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크레딧 발급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류를 송부한다. 의견 수렴 대상 기관은 의견 수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d)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탄소 크레딧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기관 및 농림환경부에 통보하여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한다.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20a조. 국제 탄소 크레딧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⁵⁶

1. 국제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서명국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탄소 배출권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

⁵⁶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18항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8항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외의 조치는 파리 협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국제 조약에 따라 이행된다;

33

b) 파리 협정 제6.4조의 메커니즘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c) 본 항 a호 및 b호에 규정되지 않은 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은 해당 메커니즘을 관리하는 기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승인

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농림환경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프로젝트 승인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08호에 규정된 신청서;

기제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설계 문서;

제도의 규정에 따른 기술 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심사 보고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의 전문 활동과 관련된 각종 허가증 및 문서의 대조용 원본 첨부 사본 또는 공증된 사본;

b)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신청 기관에 다음 중 하나를 통지한다: 서류가 적격한 경우 승인, 서류 보완 또는 정비를 요청하거나,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거부. 신청서 보완 및 수정 기한은 보완 및 수정 요청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c)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승인 신청서를 평가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청취받은 기관은 서류가 첨부된 의견 청취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농림환경부는 다음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탄소 크레딧 생성 방법; 제6.4조 메커니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의 적합성;

d)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 장관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신청 기관에 통보하며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한다. 승인되지 않는

승인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파리 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승인 서식.

3.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으로의 전환 등록 승인

a)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투자 주체인 기관 및 단체는 전환 승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직접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농림환경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승인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본령에 따라 부속서 V의 양식 제09호에 규정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환 등록 신청서;

청정개발체제(CDM)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설계 문서;

메커니즘 6.4 관리 기관에 전환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 및 메커니즘 6.4 관리 기관이 전환 요청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b)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신청 기관에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통지한다: 서류가 적법한 경우 승인; 서류 보완 또는 정비를 요청하거나, 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부. 신청 서류 보완 및 수정 기한은 서류 보완 및 수정 요청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c)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전환 신청서를 평가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송부된 의견 요청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d)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 장관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환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신청 기관에 통보하며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한다. 승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환 승인 서식;

다) 농림환경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환 등록이 승인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해 제6.4조 메커니즘 관리 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탄소 크레딧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국제 이전 승인

a)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 양에 대한 국제 이전을 승인하는 경우, 제1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을 부여받은 기관은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10호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농림환경부에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환경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탄소배출권 이전을 승인하는 문서를 검토·발행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b) 국제 탄소배출권 양도에 대한 승인 및 본 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와 관련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외 파트너와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매 계약 수립 과정에서 주관 기관은 국제 이전을 위한 승인 서면이 필요한 탄소 배출권 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국제 이전을 위한 승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은 승인 신청 서류를 농림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 프로젝트 설계 자료; 국제 이전을 제안하는 탄소 배출권 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농림환경부는 제안된 서류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20일 이내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바탕으로, 농림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규정에 따라 승인 서류를 검토·발행하고, 신청 기관에 통보하며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공표한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c)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은 베트남의 NDC 목표에만 사용되며, 타국의 NDC 목표나 기타 국제 감축 목표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탄소배출권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메커니즘 주관 기관으로부터 등록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11호에 따라 프로젝트 정보를 농림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b)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관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양식 제12호에 따라 농업환경부에 수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은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의 목록 제01호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 탄소시장 발전의 책임⁵⁷

1. 재무부는 탄소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탄소 시장 활동을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한다.

2. 농림환경부는 주관을 맡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탄소 거래소를 운영하며,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탄소 시장 참여 대상자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

3.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지방 인민위원회는 농림환경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탄소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대중 매체를 통해 탄소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조직한다.

제3장 오존층 보호

제22조. 오존층 파괴 물질의 통제 및 통제 대상 오존층 파괴 물질의 관리·제거 로드맵

1. 규제 대상 오존층 파괴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브로모클로로메탄;
- b) 사염화탄소(이하 CTC);
- c) 염화불화탄소(이하 CFC);
- d) 할론;
- d)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로카본(이하 HBFC);
- e) 염화불화탄소(이하 HCFC);
- g) 브로모메틸;
- h) 메틸클로로포름.

⁵⁷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19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9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HCFC 물질의 단계별 관리 및 퇴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³⁷의 단계: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의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b)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단계: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의 3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c) 2030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연간 평균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d⁵⁸) 2040년 1월 1일부터: HCFC 물질을 완전히 배제한다.

3. HCFC의 국가 총 소비량은 수입된 HCFC의 양에서 수출된 HCFC의 양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오존층 파괴 잠재력에 따라 환산된 HCFC의 기준 소비량은 221.2톤이다.

4⁵⁹.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는 물품의 소독 및 검역 목적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5⁶⁰.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 약속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금지 목록

a)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 약속에 따라 통제 물질 및 통제 물질을 함유하거나 통제 물질로 제조된 장비,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는 목록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조약의 이행 약속에 따라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목록 제01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

b) 본 법령에 따라 공포된 부속서 VI의 목록 제01호에 속하는 규제 물질을 수입할 때의 면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입 기관은 통관 절차를 밟을 때 규제 물질과 수입 목적을 명확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세관 당국은 신고 정보와 첨부 서류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처리한다.

⁵⁸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20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0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⁵⁹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0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⁶⁰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0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0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항공 분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후의 규제 물질 또는 생산 과정에서 제거할 수 없는 미량 불순물 형태로 수입 장비나 제품에 잔류하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규제 물질의 수입 시, 수입 기관은 관련 분야 및 업종에서 인정받은 검사·시험·검정 기관이 해당 ISO/IEC 표준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면의 사본 1부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c) 총리는 국방, 안보 및 질병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 제1호 목록에 포함된 규제 물질 및 규제 물질을 함유하거나 규제 물질로 제조된 장비·제품의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23조. 규제 대상 온실가스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관리·제거 로드맵

1. 규제 대상 온실가스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라 함)이다.

2. HFC 물질의 단계별 관리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은 다음과 같다:

a)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단계: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국가 총 생산량이 기준 생산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b) 2029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의 단계: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총 생산량이 기준 생산량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2035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국가 총 소비량이 기준 소비량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총 생산량이 기준 생산량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2040년 1월 1일부터 204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국가 총 소비량은 기준 소비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총 생산량은 기준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2045년 1월 1일부터: 국가 총 소비량은 기준 소비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총 생산량은 기준 생산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HFC 물질의 국가 총 소비량

a) HFC 물질의 국가 총 생산량은 생산된 HFC 물질의 양에서 폐기된 HFC 물질의 양을 차감(-)한 후, 이산화탄소 CO_2 환산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b) HFC 물질의 국가 총 수입량은 수입된 HFC 물질의 양에서 수출된 HFC 물질의 양을 차감(-)하고, 이를 CO_2 환산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c) 국가 HFC 소비 총량은 국가 HFC 생산 총량에 본 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국가 HFC 수입 총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39

4. HFC 물질의 기준 소비량 및 생산량

a) HFC 물질의 기준 소비량은 2020년, 2021년, 2022년의 CO_2 환산량 기준 HFC 물질 평균 소비량에 본령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HCFC 물질의 기준 소비량(CO_2 환산량 기준)의 65%를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b) HFC 물질의 기준 생산량은 2020년, 2021년, 2022년의 CO_2 환산량으로 환산한 HFC 물질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농림환경부 장관⁶¹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베트남의 HFC 물질 기준 생산량 및 소비량을 공표하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각 단계별 국가 총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제24조. 규제 대상 물질의 사용 등록 및 보고

1⁶². 규제 물질 사용 등록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규제 물질의 생산 활동을 하는 기관;

b) 규제 물질의 수출·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c) 규제 물질을 함유하거나 규제 물질로 제조된 장비 및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기관;

d⁶³) 규제 물질을 함유한 장비를 소유한 기관: 정격 냉방 용량이 26.5kW(90,000 BTU/h) 이상인 에어컨; 정격 전력이 40kW 이상인 산업용 냉동 장비;

đ) 규제 물질의 수거,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은 농림부 및

⁶¹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⁶²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1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⁶³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항 제21호 b목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환경⁶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제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제 물질 사용 등록 서류(이하 ‘등록40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시점은 발송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3⁶⁵ .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01호에 따른 규제 물질 사용 신청서: 원본 1부;

b) 기업법, 투자법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등록 기관의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 기관의 확인 및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이 찍힌 사본 1부 또는 원본 장부에서 추출한 전자 사본, 혹은 원본에서 인증받은 전자 사본(단, 기업 등록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거나, 조회할 수 있더라도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농림환경부는 해당 기관에 이 항에 규정된 서류의 사본(등록 기관의 확인 및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이 있는 것) 또는 원본 장부에서 추출한 전자 사본, 혹은 원본에서 인증받은 전자 사본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4⁶⁶ .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등록 신청 기관에 서류가 적격하다고 인정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서류 보완 및 정비를 요청한다. 등록 서류의 보완 및 정비 기한은 서류 보완 및 정비 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5⁶⁷ . 유효한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림환경부는 등록 서류를 종합 평가하고, 규제 물질 사용 등록을 완료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정 절차 처리 정보 시스템 및 농림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한다.

⁶⁴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⁶⁵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⁶⁶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⁶⁷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농림환경부⁶⁸에 규제 물질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접수 시기는 발송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6a⁶⁹. 제24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기관의 규제 물질 사용 현황 보고서에 첨부된 등록 정보는 국가 관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을 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7.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 중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설립·운영되는 자는 농림환경부⁷⁰에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 물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및 증액 요건⁷¹

1. 제22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물질에 적용되는 생산·수입 할당량은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총 소비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질은 이 법령 제23조 제3항 c호에 규정된 국가 총 소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할당량은 제24조 제1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기관에 매년 배분되며, 관리 요구 사항, 사용 수요 및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정된 할당량 총량은 규제 대상 물질의 국가 총 소비량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잔여 할당량의 배정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잔여 할당량의 배분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⁶⁸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⁶⁹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21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21조 제2항 c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⁷⁰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라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⁷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2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 저지구온난화잠재력(GWP)을 가진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기관 중 할당량 추가가 필요한 경우. 저지구온난화잠재력(GWP) 값은 베트남의 규제 물질 관리 및 퇴출에 관한 국가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b)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기관;

c) 할당량을 배정받은 기관 중 할당량 추가가 필요한 기관.

4. 할당량을 배정받은 기관은 해당 할당 연도 내에 한해 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 12월 31일 이후 등록된 기관에 대한 규제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은 할당량 사용 수요 등록 서류, 기업의 역량 서류 및 규제 물질에 대한 관리 요건을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6.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의 CO₂ 환산 소비량 비율에 따른 순위에 근거하여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이 검토 및 추가됩니다.

7. 할당량 조정 및 증액은 할당량을 배정받은 기관의 요청, 할당량 배정 기관의 할당량 사용 현황 및 규제 물질에 대한 관리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8. 할당된 할당량에 따라 규제 물질을 수입한 후 이를 수출한 기관의 경우, 수출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 할당량 추가가 검토된다. 추가 수입 할당량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이미 부여된 수입 할당량에 조정·추가될 수 있다.

제26조. 규제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추가, 취소 절차

1⁷². 이령 제24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기관은 규제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을 검토받는다.

2⁷³. 이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환경부는 22영업일 이내에 이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03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을 검토·결정한다:

⁷²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 제1조 제23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3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⁷³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83/2026/ND-CP호(2026년 3월 23일)의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a) 조직의 규제 물질 등록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한다;

43

b) 국가 총 소비량과 규제 대상 물질에 대한 관리 목표 및 요건을 대조;

c) 필요한 경우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역량, 기술 및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

d) 할당량 배분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제출 기한은 의견 수렴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상기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의견 수렴 대상 기관이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⁷⁴.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조정·추가 신청이 필요한 기관은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04호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7월 10일 이전에 농림환경부에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검토, 조정 및 추가를 받아야 한다. 할당량 조정 및 증액은 할당량 배정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농림환경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부속서 VI의 양식 제03B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22영업일 이내에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의 조정 및 증액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한다.

4⁷⁵. 기후변화 전문 관리 기관은 2영업일 이내에, 이 시행령에 따라 부속서 VI의 양식 제05A호 및 제05B호에 따라 행정 절차 처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에 대해,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보충 사항을 통지한다.

5⁷⁶. 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추가에 대한 통지는 세관 당국이 수입되는 규제 물질에 대한 세관 절차를 통제하고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⁷⁴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83/2026/ND-CP호(2026년 3월 23일)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⁷⁵ 이 항은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2022년 1월 7일)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83/2026/ND-CP호(2026년 3월 23일)의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⁷⁶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3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후변화 전문 관리 기관은 통제 대상 물질의 수입 할당량 배분, 조정 및 보충에 관한 공지를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에 갱신 및 게시하여, 세관 당국이 이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교환·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입 기관은 관세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게시된 ‘통제 물질 수입 할당량 배분·조정·추가 공고’의 사본 1부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6. 농림환경부⁷⁷⁾는 다음의 경우,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6호에 따라 규제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a)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b) 통제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증액 결정의 무단 양도 또는 사용;
- c)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된 위반 사항.

할당량 취소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후변화 전문 관리 기관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7. 농림환경부⁷⁸⁾는 기후변화 전문 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 배정, 조정, 추가, 취소와 관련된 등록, 보고 및 기타 활동에 대한 검토, 평가, 종합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8⁷⁹⁾. 농림환경부는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 시스템을 관할 범위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시스템을 통해 규제 물질의 할당 및 수입 관리를 수행한다.

⁷⁷⁾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⁷⁸⁾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⁷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3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27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D-CP 제27조.

제27조.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 관리·제거에 관한 국가 계획

1.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⁴⁵의 관리 및 퇴출에 관한 국가 계획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적 약속에 부합해야 하며, 베트남 내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관리 및 퇴출을 수행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 관리 및 퇴출에 관한 국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사용, 관리, 제거 현황 평가; 변화 추세 예측; 계획의 목표, 로드맵, 지표;

b) 단계별 및 사용 분야별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와 총량;

c)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관리 및 제거 조치; 협력 및 정보 공유 방안;

d) 계획의 이행 및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개인, 관련 당사자의 책임.

3. 농림환경부⁸⁰는 주관을 맡아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관리 및 퇴출에 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4⁸¹.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표 01에 규정된 장비, 제품에 포함된 규제 물질 또는 장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규제 물질의 관리 및 퇴출 로드맵; 이행은 농림환경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제28조. 규제 물질의 수거,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

1⁸². 이 규정 제24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규제 물질을 함유한 장비를 소유한 기관은 수집,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⁸⁰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⁸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⁸²)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5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 원칙에 따라 규제 물질을 사용 및 처리해야 한다:

- a) 2024년 1월 1일부터 장비 및 제품에서 ~~46~~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규제 물질의 회수를 의무화한다;
- b) 수거 후 규제 대상 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권장합니다;
- c) 규제 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파기 처리해야 한다;
- d) 이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규제 물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규제 물질의 수집, 운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a) 개별 제품 및 장비의 설치, 수리,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물질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거, 운반 및 보관해야 한다;
- b) 수거된 규제 물질이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림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실시한다⁸³;
- c⁸⁴)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3. 통제 물질의 수거, 운반 및 보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통제 물질의 수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회수기, 회수용 저장탱크, 진공 펌프, 계량 저울, 누출 검사 장비, 압력계 및 안전 장비가 포함된다;
- b) 본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
- c) 농림환경부⁸⁵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수거, 운반, 보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기술자가 장비의 설치, 운전, 유지보수 및 수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⁸³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⁸⁴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25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항 제25조 제2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⁸⁵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물질을 함유한 경우, 적절한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또는 교육부⁸⁶가 주관하고 농림환경부⁸⁷와 협력하여 수립한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 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⁸⁸. 지정된 냉동 용량이 26.5kW (90,000 BTU/h) 이하이거나 전기 소비량이 40 kW 미만인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당 장비 및 제품에 포함된 규제 물질을 수거, 재활용 및 처리할 책임이 있다.

6. 농림환경부⁸⁹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규제 대상 물질의 수집, 운송, 보관,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을 수립하고 공포한다.

7⁹⁰. 농림환경부는 규제 물질이 포함된 장비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

제29조. 규제 물질 관리에 관한 책임

1⁹¹. 농림환경부는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를 이행하는 국가 주무 부처로서, 정부에 대하여 규제 대상 물질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농림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a) 베트남이 가입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규제 물질을 관리하고, 단계별 및 매년 HCFC, HFC 물질의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을 배분, 조정, 보충하며;

⁸⁶ “노동·상병·사회부”라는 문구는 “교육훈련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⁸⁷ “천연자원 및 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⁸⁸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5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5항 c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⁸⁹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⁹⁰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5항 d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5항 d호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이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⁹¹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6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정부령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수출입 관리 및 허가;

이 법령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메틸브로마이드의 관리 및 수출·수입 허가;

48

b) 통제 물질의 관리 및 퇴출에 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제출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 약속에 따라 통제 물질의 목록, 사용 지침 및 관리 규정을 제정, 개정, 보완한다;

c) 규제 대상 물질의 등록, 보고, 할당량 배분 및 수출입 관리에 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규제 대상 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 원스톱 포털과 연계한다;

d)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 조직; 베트남의 몬트리올 의정서 준수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타국 담당 기관과 협력;

d) 등록, 보고, 할당량 사용에 대한 감사,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며, 규제 대상 물질의 수거, 재사용,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행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수행한다;

e) 환경보호법,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이행하고, 규제 물질 관리와 관련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²⁹² . 산업통상부는 농림환경부와 협력하여 규제 대상 물질에 대한 수입 및 생산 할당량의 배분, 조정, 보충을 담당한다.

3. 농림환경부⁹³는 주관을 맡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a) 이 규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수출·수입 관리 및 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b)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을 농림환경부의 메틸브로마이드 관리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한다⁹⁴;

⁹² 이 조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1조 제26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6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⁹³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의 제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⁹⁴ “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c) 관리 범위에 속하는 규제 물질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공유하여, 매년 1월 30일 이전에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07호에 따라 베트남 내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국가 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한다.

4. 재무부는 주관을 맡아 농림환경부⁹⁵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a) 국가 원스톱 서비스 포털을 통해 규제 대상 물질의 수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며;

b) 정보 및 관리 대상 물질이 포함된 물질 및 상품의 수출입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가 주관 기관에 제공·공유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본령에 첨부된 부속서 VI의 양식 제08호에 따라, 또는 국가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베트남 내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5⁹⁶. 교육훈련부는 주관을 맡아 농림환경부와 협력하여:

a) 통제 물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자격증 및 인증서를 발급하며;

b) 관련 분야의 중급·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졸업 시 습득해야 할 최소 지식량 및 역량 요건에 통제 물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c) 규제 물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게 직업 기술 자격증을 발급한다.

5a⁹⁷. 내무부는 냉동 및 공조 시스템에 대한 산업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공포한다.

6.公安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

⁹⁵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⁹⁶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 제1조 제26항 c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6항 c호에 따라 개정·보완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⁹⁷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 제1조 제26항 d호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할 권한에 따라 각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농림환경부⁹⁸와 협력하여 관리, 통제, 사용 감축 및 규제 물질 제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예방 및 적발 업무를 수행한다.

7. 농림환경국⁹⁹은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a) 관할 구역 내 기관들의 규제 물질 배제 및 수거, 재활용, 재사용 또는 폐기 규정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b) 관할 구역 내 규제 물질 사용 기관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를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

c) 이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물질의 관리 및 제거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거나 관할 기관에 보고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제30조. 협력 메커니즘 및 방식의 수립 및 이행

1. 농림환경부¹⁰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가 차원의 주무 부처로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력 메커니즘 및 방식의 수립, 이행, 정보 제공에 관한 협상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2.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치·사회 단체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⁹⁸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⁹⁹ “자연자원환경국”이라는 용어는 2025년 2월 28일자 제45/2025/NĐ-CP호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환경국”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 및 현, 구, 시, 성직속시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자원환경국”이라는 용어가 “농림환경국”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¹⁰⁰ “자연자원환경부”라는 용어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31조.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1.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⁵¹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술 이전은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과학기술부, 농림환경부¹⁰¹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적용 활동을 전개하여 각 단계별 국가, 부처,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제32조.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1.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도급 인민위원회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조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대한 사회의 역량과 인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2.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
 - b)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 전문 인력 양성 및 개발; 시설, 산업 및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측정, 보고, 검증; 규제 대상 물질이 포함된 장비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를 수행하는 기술자 양성;
 - c) 각급 교육 시스템 및 대중매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 내용을 보급;
 - d)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과학기술협회, 정치·사회·직업 단체, 사회·직업 단체 및 기타 조직의 활동에 반영;
 - d)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 관련 제품 및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관련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제33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 활동 장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온실가스 유발 물질 소각 활동에는 이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탄소 크레딧 협력, 교환, 상쇄 제도가 적용된다.

¹⁰¹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는 “농림환경부”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임기 중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2025년 2월 18일자 국회 결의 제176/2025/QH1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2¹⁰² .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 친화적 지속 가능한 냉방 및 오존층 보호, 규제 물질 재활용에 관한 기술 응용 연구, 이전 및 5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3¹⁰³ .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 친화적 지속 가능한 냉방, 오존층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 전환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 규제 대상 물질의 수거, 재활용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환경보호법 제141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는다.

제5장 시행 규정

제34조. 시행 효력¹⁰⁴

1¹⁰⁵ . 이령은 2022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¹⁰² 이 항은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27항 a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7항 a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¹⁰³ 이 항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7항 b호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¹⁰⁴ 2026년 3월 23일자 정부령 제83/2026/ND-CP호 제4조 및 제5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4조 시행 조항

1. 이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개인은 이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경과조치

등록 서류, 할당 신청, 조정, 보완된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 제24조 제3항, 제6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처리되며,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보완된 규정에 따라, 이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에 농림환경부가 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이 정부령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림환경부에 제출된 서류 중 보완 또는 정비가 요구된 경우, 해당 보완 및 정비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2022년 1월 7일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이는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것이다; 향후 처리 절차는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¹⁰⁵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D-CP호 제2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시행 조항

“이 법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HCFC 물질의 수입 할당량을 배정받은 기관 및 2022년 HCFC 물질의 수입 할당량을 등록한 기관은 이 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35조. 이행 책임¹⁰⁶

1. 농림환경부 장관은 이 시행령의 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조직을 담당한다.

2.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중앙 직할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의 이행을 책임진다.

농림환경부 _____

통합 문서 인증

번호: /VBHN-BNNMT
40

하노이, 2026년 3월 27일

수신:

- 트란 독 탕 장관 (보고용);
- 정부 사무국 (공보 게재용);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각 성·시의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 각 성·시의 농림환경국;
- 법무부 법률문서검토 및 법집행조직국;
- 정부 전자정보포털(게재용);
- 농림환경부 산하 기관;
- 농림환경부 전자정보포털;
- 참조: VT, PC, BDKH.

서명. 장관 차관



(Handwritten mark)

¹⁰⁶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9/2025/NĐ-CP호 제3조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제06/2022/NĐ-CP호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이행 책임

1.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시행령에서 부여된 조항 및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이미 공포된 문서를 검토하여 이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보완 또는 대체해야 한다.
2.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개인은 이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